

〈논 문〉

1951년 거창사건 형사재판의 검토

韓寅燮*

1. 서론 — 거창재판의 중요성 및 자료의 성격1)

이 글은 1951년 거창양민학살사건에 대한 군법회의 재판에 초점을 맞춘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일어난 일련의 권력남용형 양민학살사건 중에서, 거창사건은 유일하게 커다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나아가 형사재판으로까지 진전되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재판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최종판결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장애물이 적지 않았으며, 전시하라는 객관적 상황도 재판에 여러 제약을 안겨주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1951년 전쟁중에 국군병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재판은 그만큼 더 가치있는 기록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거창사건이 가진 중요성만큼 여러 증언과 기록들이 나와 있다. 그러나 한국현대사의 대부분의 기록들이 그러하듯이, 증언과 기록에는 정확한 출처가 나와 있지 않아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증언이라면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했으며 누가 기록했는가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이며, 기록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부분의 글들은 ‘비화’(秘話) 형태나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어 얼마만큼의 신뢰를 주어야 할지 의문스러운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많은 자료들이 이미 쓰여진 다른 글을 인용하다보니, 앞서 씌어진 글의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느끼면서, 우선은 1951년 2월에 거창 신원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하는 정확한 증언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군대와 국회와 정부와 법원은 모두 국가기관으로서 자신들의 활동을 기록한다.

*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副教授

1) 필자는 거창사건을 연구하면서 거창사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일부는 작업을 완료하여 2003년도에 3권의 분량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인쇄 관약사)에서 출판되었다. 한인섭 편, **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Ⅰ) - 신문편**, **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Ⅱ) - 국회자료편**, **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Ⅲ) - 재판자료편**이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자료집(Ⅰ)**, **자료집(Ⅱ)**, **자료집(Ⅲ)**으로 각각 인용한다.

그러나 거창사건에서 그 기록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양민학살사건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거창사건의 기록화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거창사건의 진상조사에는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국회 등이 별개로 혹은 공동으로 관여하였고, 나름대로 상부에 보고를 했다고 한다. 물론 조사보고의 내용은 기관의 이해관계,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불철저했거나 축소되거나 조작되었다. 그러나 그 조사보고 내용 자체라도 입수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가치있는 사료가 될 수 있다. 그 중 우리는 처음으로 국회의 조사보고서를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입수하였다. 거기에는 특히 국방부가 증인을 선별하고, 공포 분위기로 몰고가서, 사건을 축소조작하려 한 의도를 여실히 읽을 수 있었으며, 다른 기관(국회, 내무부, 법무부)이 그에 주눅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1951년 7월 말부터 진행된 거창사건 재판에 관한 기록은 다른 자료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 그것은 피고인들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 신성모의 사임 이후 수사를 방해하는 암적 존재가 제거되었다는 점, 군수뇌부와 군검찰이 비교적 수사의지를 갖고 임했다는 점 등이 보여진다. 또 하나는 군검찰이 다른 기관에서 작성된 자료들을 그래도 상당히 입수하여, 일종의 종합자료집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보다 입체적으로 거창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런데 거창사건 재판기록은 육군본부 군사기록보존실에서 잠자고 있었다. 재판 자료는 거창사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술 및 내용수정이 가능한 정도의 생생하고도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자료에도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담겨있던 것은 아니었다. 우선 다음 자료가 들어 있지 않았다. 첫째, 판결문 정본이다. 판결문의 일부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1970년대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 판결문의 전체 내용은 이 재판자료에 들어있지 않았다. 다만 ‘고등군법회의 판결확인’(1952. 1. 14)에 원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것을 통해 원판결의 내용을 거의 알 수 있다. 둘째, 공판조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재판에서 어떤 쟁점을 놓고 어떤 주장과 반론이 오갔는지를 알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예심조서 및 최종변론을 독해함으로써, 공판정에서의 주장과 반론을 추론해낼 수 있다. 셋째, 김종원 관련 수사기록이 모두 빠져 있다. ‘고등군법회의 판결확인’을 보면 김종원의 서약 증언, 예심조서, 피의자청취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서류들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김종원 관련기록, 공판조서, 판결문은 재판의 핵심

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왜 합철되어 있지 않은지 알 길이 없다. 선의로 해석하자면, 이 부분을 ‘고등군법회의 판결확인’을 작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료들을 법무감실에서 가져다 쓰다가 원기록에 합체하지 않고 어딘가 두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의 행방을 찾아야만 재판 전체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굴한 국회기록 및 『재판기록』 그 자체는 많은 1차문서들이 포함되어 있고, 1951년 당시의 기록인만큼 이후의 증언과 증언가치면에서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본다. 물론 문서와 증언에는 허위와 진실이 뒤섞여 있다. 그러나 허위진술 및 증언도 그것이 국면에 따라 반복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기록이 진실을 탐색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느낀다. 따라서 이번에 기록들을 중심으로 하여, 거창사건의 처리경과 및 결과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어떻게 알려졌고, 어떻게 재판이 가능했는가

(1) 신중목 의원의 폭로 및 국회의 조사결의

한국전쟁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량학살은, 거창사건을 제외하고는 공개폭로되지 않고 묻혔다. 그러나 1951년 3월 29일 신중목 의원이 국회 비공개회의²⁾에서 거창의 학살사건을 힘들게 폭로함으로써, 거창사건은 공론화의 물결을 탈 수 있었다.

신 의원의 폭로는 세 가지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거창사건의 진상을 처음으로 폭로함으로써 양민학살을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낸 것이다. 신의원

2)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자료집(II)**, 1쪽.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장(장택상): “신중목 의원으로부터 거창사건 보고가 있답니다. 신중목 의원 나오세요. 그런데 신중목 의원의 요구가 본 보고는 비밀회의에서 하는 일이 좋다고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세요(「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상오 10시 20분부터 상오 11시 25분 사이에 신중목 의원의 폭로와 그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이어진다. 다만 그 발언내용은 비공개회의인 까닭에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4·19 직후 한국일보 1960. 5. 17. 조건/석간, 5. 18. 조건, 5. 19. 조건, 5. 20. 석간에 그 전문이 거의 공개되었다. 한국일보 내용은 **자료집(I)**의 해당일자 참조.

은 자신의 지역구인 거창군의 인사들이 “도무지 우리 지방에서는 살아갈 도리가 없다”는 말을 듣고 “사사로 고향에 들어가” 보니, 약 8백 명의 군인(제9연대 제3대대)들이 식량을 강제로 징수하고, “북상면이라는 한 면에서 1천 2백호를 불사지”르고, “불탄 집에서 나온 소를 수십두 몰아다가 잡아먹기도 하고 시장에 갖다가 팔”기도 하는 등의 민폐를 저질렀음을 먼저 보고하였다. 그런 다음 군작전 관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다음 자신이 듣고 본 학살내용을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그래서 이것을(위에서 언급한 군인들에 의한 각종 민폐와 약탈: 필자 주) 다 경과를 보고 부산에 제가 내려오니 그 때에 신원면이라는 면에서 작전을 하는 데 그 때에 말로는 약 2천 명의 사람을 죽였다 이러한 말이 들어와요. ... 그 뒤에 정보를 들으니 ...신원면 6개 부락의 약 700호를 불살라 질러 버렸다 또 그리고 역시 거기에서 넘어온 쌀을 산청으로 넘기고 거창으로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700호 가량은 불살라버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나가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6개 부락에 남아있는 사람 한 6백 명을 신원국민학교에다 모아놓고 경찰관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중에서 군경가족은 다 이리오라 이러한 명령이 있어가지고 경찰관이 ... 한 30여 분 이내에 정리해내라 이런 명령이 있다고 해서 경찰관이 자 군경가족은 이 편으로 나오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눈치가 있고 한 사람은 군경가족의 한편을 나오고 했는데 나머지 사람은 다시 산골짜기에 몰아내가지고 총을 쏘가지고 죽이고 심하기는 불을 휘발유에 질러가지고 거슬러서 죽였다는 것입니다.”³⁾

둘째, 신의원의 폭로내용에는 대통령과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국무총리실에서 이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조사에 들어갔으며, 그 조사결과를 각 부처에서 갖고 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듣는 바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이 정보를 들으시고 내무부에 조사를 해라 국무총리한테 조사를 해라 또 가령 국방부에 조사를 하고 검찰진영에서 조사를 해라 해서 그러한 분부가 내리셨다고 해서 제가 듣기로는 내무부 계통에서 현지를 조사한 결과에는 약 3백 명이라고 그래요 살상당한 사람이... 또 검찰진영에서 검사들이 가가지고 조사한 결과에는 약 5백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3) 한국일보 1960. 5. 17. 석간 2면, 자료집(1), 210~212쪽.

약 2백 명의 차가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방주민들이 뜬 말로 하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한 숫자로 2천 명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구체적인 폭로는 각 부처의 보고를 거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국방장관(신성모)은 거창사건을 국방부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회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답변한다. 내무부장관(조병옥) 역시 “대통령의 명령에 의지해서 군부와 연락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조사해 본 것만은 사실”이라고 보고한다. 법무부장관(김준연)은 “검사 두분이 같이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왔”지만 “그 분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충분히 조사했다고 하지마는 진상을 파악했다고 보고드리기 어렵다”고 한다. 이리하여 3개 부처에서 각각 조사활동을 수행했음이 알려졌으며, 그를 토대로 국회 및 3부 합동조사의 길을 튼 것이다. 이는 “진상을 국민 앞에 명백히 하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정부나 국방부를 믿고 총력경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⁴⁾는 반응을 당연히 불러일으킨 결과인 것이다.

셋째, 신 의원은 이같은 민간인학살이 거창군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언급한다.

동시에 거창군 인접인 산청, 함양에도 숫자는 모르지만 전투 작전시기에 많은 사람이 상한다는 말이 지금 민간에는 돌고 있어요. 국회에서 적당한 기회를 얻어 가지고 이 실체를 조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까 해서 이상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⁵⁾

그러나 산청, 함양은 물론 인접 지역의 학살사건이 1951년에 제대로 조사되지 못해, 거창사건만 국회조사 및 재판에서 다루어지게 된 것은 해당 지역의 인사로서는 특히나 유감천만일 것이다. 다만 1951년 첫 국회폭로에서부터 산청, 함양이 언급되었고 조사요청이 있었다는 점은 지적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첫 폭로가 이루어진 1951년 3월 29일의 회의는 “경남 거창군 내에서 발생한 양민학살사건을 규명하기 위하여 귀하(대통령을 말함: 필자 주)의 국회입석 및 관계장관인 국방 내무 법무 각 장관으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진상을 보고케 함과 아울러 그 대책을 강구하기로 결의”하여 3월 30일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⁶⁾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국회입석은 할 수 없으나 정부부처의 비

4) 동아일보 1951. 3. 31. [사설] “국민 앞에 공개하라”, 자료집(Ⅰ), 2~3쪽.

5) 한국일보 1960. 5. 17. 석간, 자료집(Ⅰ), 210~212쪽.

6) 「거창사건 규명과 대통령의 국회입석 요청에 관한 건」(1951. 3. 30), 자료집(Ⅱ), 162쪽.

행의 증명만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법리적으로 주저없이 처단”할 것이라 언명하였다.⁷⁾ 3월 30일에는 「거창사건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 뒤, 3월 31일 조사위원을 선임함으로써 국회 차원의 조사준비를 마쳤던 것이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다.⁸⁾

이렇게 빠른 속도로 조사단이 구성될 수 있었던 것은 거창사건이 이미 현병대를 비롯한 군부, 행정부,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이다.⁹⁾ 이러한 초기전파는 거창사건을 처음 신중목 의원에게 전한 청년단체 함차산의 제보를 위시하여, 유족 및 거창출신 인사들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¹⁰⁾ 각계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창사건은 행정부처 내의 주요한 현안

7)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55호, 1951. 3. 30. **자료집(II)**, 3쪽.

8) 「거창사건조사보고서」(1951. 5. 8)에 편철. **자료집(II)**, 158~161쪽.

9)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서민호의 공개. “동사건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이우국(李憂國)」이라는 변명을 쓴 사람이 보내준 투서에 의해서인데 그 당시 거창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씨가 보고를 얹으므로 내가 폭로하였다. 폭로하기까지는 모소령이 찍어 두었다는 사진(본면계제)을 모중학선생으로부터 입수했으며 그밖에 많은 방증을 수집했다.”(동아일보 1960. 5. 14. 조간 2면, **자료집(Ⅰ)**, 150쪽)

10) 향도일보 1989. 3. 24, **자료집(Ⅰ)**, 317~318쪽.

“신원면의 환장할 참변 소식은 당시의 11사단 3대대 병력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총칼을 앞세워 삼엄한 함구령과 외부 왕래를 막았지만 대한청년단 거창 부단장이던 함차산의 현지 탈출로 부산 피난국회 거창 출신 신중목 의원에게 전해졌다.

사건 발생 십여일 후의 일이었다. 피난국회로 신의원을 찾아온 함차산의 첫마디는 “거창에 큰 참변이 났다”로 시작됐다. 거창뿐만 아니라 11사단 3대대 병력이 공비 토벌작전을 벌인 지리산 주변의 산청, 함양, 합천, 전남의 장성, 광양군 주민들도 비슷한 상황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신의원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해방직후 거창군수를 지낸 인물이다. 함차산은 신의원이 군수 재직시 만든 거창 대한청년단 단원이었기에 각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다.

신의원은 함차산을 앞세우고 급히 거창으로 갔다. 거창읍까지는 갔으며 신원면 과 정리로 통하는 길은 막혀 있었다. 당시는 전시였고 계엄령 하였다. 국회의원이라고 총 부리를 헤치고 나설 수 있는 분위기는 아예 멀리 있었다. 현장 접근은 전혀 불가능했다. 만나는 주민들도 뭔가를 아는 눈치였으나 모두 꿀먹은 벙어리였다. 입을 연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다. 신의원이 거창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조차 벌써 군 당국의 감시를 받을 정도였다. 신의원은 결국 거창 군수 시절부터 인연이 있는 유봉순 거창경찰서 사찰주임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들을 수 있었다.

대충 들을 수 있는 대로 들은 신의원은 부산 서대신동에 있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집 주변에는 현병이 깔려있었다. 때문에 발도 넣어보지 못하고 친척이 원장인 어느 병원으로 갔다. 여기서 집으로 연락을 해보니 신의원이 거창을 가고 난 사이 현병들이 가택 수색을 이미 했고 약 40~50명의 현병이 신의원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부인의 이야기였다. 신의원이 예감한 대로 관계 군당국에서 신의원을 쫓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신의원은 당시는 전시라 국회의원이라도 군에 끌려가면 낭패를

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 수세에 몰린 국방부와 대통령은 사건의 성격에 대한 정지작업을 상당한 정도로 진척시키고 있는 와중이었다. 정부의 각 부처는 거창사건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조사에 착수하여 자체 보고서를 갖고 있었다. 4월 5일과 6일 국회와 정부의 합동조사 시에 국방부를 대표한 김종원 대령은 이렇게 경과를 요약하고 있다.¹¹⁾

현재 국회가 여기에 지금 조사위원단이 와서 조사하는 목적이... 이 동기가 어디 있느냐하면 대통령 각하께서는 대구에 각 군수이상의 총합회의가 있을 때에 국무총리 각하로부터 대통령 각하께 보고드린 사실... 「거창사건의 내막을 아십니까 거창에서 국군이 토벌 중에 있어서 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동시에 거기에는 찢먹는 어린애와 나이 많은 노인이 대다수이었다」는 것을 대통령 각하께 보고가 되어서 이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대통령 각하께서 국방부 장관을 부르고 내무부장관을 부르고 법무부장관을 부르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불러서 즉시 여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는 것이 원동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1차, 제2차 합동보고에 있어서 내무, 국방, 법무 또는 그 당시에 행정당국의 책임자가 합동으로 여기서 조사... 제1차, 제2차에 걸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3차에 걸쳐서 우리 국회와 정부에서 대표가 나와서 조사를 하러 왔는데...

이 진술을 통해 적어도 다음 사실은 확실하다. 첫째, 거창사건은 행정부 내에 상당히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 둘째, 이미 정부의 유관부처가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 셋째, 정부 차원의 조사가 착수되었고, 부처별로 볼 때 2차에 걸쳐 조사에 관여했다는 사실. 넷째, 국회조사는 제3차조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각 조사와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당하는 예가 많았다고 했다.

결국 피신한 상태에서 거창 인근의 양민피해지역 출신 의원들과 진상을 국회에서 밝히는 문제를 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른 의원들은 현재는 전선중이라며 후환이 두려우니 국회에서의 폭로와 진상조사는 연기하자며 두려워했다. 맥이 풀렸다. 신의원은 결국 혼자서 일을 처리할 결심을 세웠다.

1951년 3월 29일 상오 피난 국회의 의사당인 부산 극장. 국회는 제54차 본회의가 속개되고 있었다. 그동안 10여일 행방을 감추었던 신중목 의원이 모습을 나타냈다. 의장에게 「긴급동의」를 제의하고 단상에 올라섰다. 신의원은 거창군 신원면의 참극과 10여일 동안의 조사과정, 자신에게 부닥치고 있는 신변위협들을 조목조목 털어놓았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11) 진술속기록(제4호) 중에서 국방부의 의견, 자료집(Ⅱ), 90~91쪽.

(2) 내무부·법무부·국방부의 별개 조사

① 내무부

거창경찰서장은 경남경찰국장에게 1951년 3월 8일 「국군토벌작전에 수반한 적 성분자 사살에 관한 건(第2報)」¹²⁾을 보고한다. 그 보고에 따르면, 먼저 2월 21일자로 1차보고를 했음을 알 수 있다.¹³⁾ 2차보고의 요지는 “부락민을 신원면 과정리 소재 국민학교 교정에 집합시켜두고 그 중 다소 개전의 정이 있는 자 또는 14세 미만, 60세 이상자 등을 제외하고 이적행위자로 확인되는 성년 283명을 공비의 연락과 후방 보급을 차단시키기 위하여 전략상 부득이 후산(後山)에서 사살 숙청을 단행하였”다는 것이다. 그 주민들은 “공비화되어 있었으므로 이적행위자로 칭할 바가 아니라 순전한 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라 이를 사살(그 중 노유 제외)하였음은 작전상 당연한 조치로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한편 순경 박세복은 증인신문(1951. 7. 16)에서 “군(郡)에서 경남 경찰국으로 제2차 보고할 시 명부가 294명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 “숙청자” 명부를 별지로 제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⁴⁾

② 법무부

법무부는 나름대로 조사를 진행한 것은 분명하나, 조사자료를 국회조사에서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조사가 미진해서 숫자라든지 또 피살자의 내용을 발표할 수 없다’¹⁵⁾는 법무부장관의 국회보고에 따라 법무부측 검사는 숫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법무부의 조사로는 ‘517명’이 사망했다는 보고를 갖고 있었다. 다음 법무부장관의 회고를 통해 조사경위를 알아볼 수 있다.

12) 자료집(Ⅲ), 85쪽 이하.

13) 1차보고(1보)와 2차보고(2보)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다. 1보는 아직 군의 입김이 미치지 전의 보고이며, 2보는 ‘책임질 질 보고’라고 경찰서장은 말한다. 1보는 ‘풍설과 소문을 종합해 가지고’ 냈으며, ‘경찰서장이 자기 관내에서 발생한 치안의 상황을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사실 진상은 모르나 이리이러한 소문이 있으니까 주의 보고 정도로서 참고보고를 해준 것’이라고 경찰서장은 진술한다. 그러나 그는 1보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꺼려한다. 대신 2보는 ‘힘이 미치는 데까지 조사도 하고 듣고 한 결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사본을 갖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거창경찰서 서장 김갑룡(金甲龍) 진술속기록”, 자료집(Ⅱ), 60쪽.

14) 자료집(Ⅲ), 82쪽.

15) 자료집(Ⅱ), 49쪽.

2월 하순에 부산 지검의 이태희 청장으로부터 신원면에서 많은 주민이 처단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나는 국무회의에서 이 사실을 보고하고 관계자들을 엄벌할 것을 제의했어요. 그랬더니 申국방은 ‘사고가 났다는 현장에 가보았더니 그런 사실이 없더라’고 반박합니다.

나는 검사 2명을 현지에 비밀리에 보내 조사케 했어요. 지프 한 대에 출장비 7만 원을 주어 보내, 피해자명단까지 입수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후 내무·국방부 조사단도 각기 현지조사를 했는데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요. 내무와 법무는 사실대로 밝히려는 태도였고, 국방부는 얼버무리려는 거였죠.¹⁶⁾

그러나 국회합동조사에서는 법무부 측에 517명이라고 증언했던 증언자가 (어떤 위협을 받았는지 몰라도) 전혀 진술다운 진술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다.¹⁷⁾ 그러나 517명은 나중에 밝혀진 바와 거의 같아, 사후적으로 보면 법무부 조사가 가장 정확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법무부 측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고, 따라서 진상규명의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가 나올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③ 국방부

제11사단 밖으로 거창사건이 처음 알려진 것은 헌병사령부에 2월 하순에 들어온 익명의 투서를 통해서였다. 같은 내용의 투서가 또 들어오자, 헌병사령관 최경록 준장은 이강대 소령을 현지에 파견하였다. “이 소령은 자세히 조사하고 사

16)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1983, 231~232쪽.

17) 법무부 : 그 때에는 당신이 517명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김차룡(신원면 구사리 주민) : 그 때에는 1,000명 죽었는지 500명 죽었는지 모릅니다.

법무부 : 약 500명이라고 하지 않고 517명이라고 했지요.

김차룡 : 4, 5백 명 죽었다고 그런 말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지 않았습
니다.

법무부 : 확신없는 일을 517명이라고 했습니다.

김차룡 : 4, 5백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 당신 말씀이예요. 재판소에서 조사당한 일이 있지요.

김차룡 : 한 번밖에 없습니다. [...]

법무부 : 그 때 조사할 때 몇 명이나 죽었다고 하드나 하니까 한 500명은 죽었다고 합
디다. 500명을 어떻게 알았느냐? 면서기한테 들으니까 517명이라고 합디다
그렇게 했지요.

김차룡 : 517명이라고 하는 말은 안했습니다.

법무부 : 면서기에게 말을 들은 일이 없습니까.

김차룡 : 없습니다. (자료집(II), 155~156쪽)

진까지 찍어왔는데 570여 명의 불탄 시체더미였다”고 한다. 그 중에는 상당수의 부녀자와 어린이, 노인도 있었다고 한다.¹⁸⁾

최경록 사령관은 이를 사건화해야겠다고申국방에게 상실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국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 헌병사에서 몇번 요청하니까申국방이 그러면 한번 현장조사를 해보자고 하여, 3월 중순께 신장관, 최경록 사령관, 윤수경(헌병사 장교), 김현숙(당시 여군부대 대령), 김철안(대한부인회 회장) 등이 현지에 갔고, 최덕신 제11사단장의 안내로 현장을 방문했다.¹⁹⁾

아마도 3월 중순께로 생각되는데, 신장관과 최경록 사령관, 그리고 그밖의 몇 분이 신원면 현장으로 갑니다. 처단장소라는 산기슭의 계곡으로 가서 내가 흙을 파보니 불에 탄 시체가 나옵니다.

겨울이라서 그랬는지 알게 묻었더군요. 한참 더 파보니까 부녀자와 어린이 시체도 몇 구 나와요.申장관도 그것을 보더니 너무 처참하게 느껴졌는지 손을 저으며, 이제 그만 파라고 합니다. 내 생각에도 어린이 시체만 안 나왔어도 거창사건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겁니다.

헌병사에 들어온 첫 정보는 약 1천 명이 살해된 것으로 돼 있었는데 현장조사 결과 군인·경찰 가족 등 5백여 명을 제외하고 5백여 명이 죽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거창경찰서에서 나는 주로 경찰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그들은 군대 입장을 옹호하면서 사건발생이 불가피했다고 하더군요.

헌병사령부의 보고 및 현지방문을 통해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적어도 사망자수가 500여 명에 이른다는 사실과 어린이도 죽었다는 사실은 파악했을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군이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제11사단장 최덕신 장군이 국방부에 올린 보고서(1951. 3. 12)를 보면 사태의 원인, 주민의 성분, 국군의 비행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²⁰⁾

18) 최경록 증언, **민족의 증언**, 210.

19) 윤수경 증언, **민족의 증언**, 211.

20) 사단장 보고서는 동아일보 1960. 5. 14. 조간 2면에 처음 공개되었다. 동아일보는 이 보고서가 1951. 3. 12일자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 자료의 전문은 **자료집 (1)**, 151~153쪽. 그리고 이 자료의 일부는 김재형, “거창의 슬픈 학살극”, 오소백 편,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 광화문출판사, 1962, 165~166쪽을 비롯하여 거창사건 연구에 널리 인용되고 있다.

거창사건 (양민 사살)

- . 사건발생일시
단기 4284년 2월 10일 11일 2일간
- . 사건발생장소
거창군신원면 과정리 대현리 덕산리
가. 과정리는 신원국민학교에서 5백미터되는 후산(박산)곡
나. 대현리는 동리 앞 계천
다. 덕산리는 동리 청연부락산곡
- . 피살자
가. 와룡리, 대현리, 중유리주민 약 250명
나. 대현리 주민 약 40명
다. 덕산리 주민 약 60명
- . 사살책임자
소속 제11사단 제9연대 제3대대 대대장 육군 소령 한동석(현재 제11사단 인사 참모보좌관으로 근무중)
- . 사살경위
… 동월 10일경 공비의 출몰지대인 와룡리 대현리 중유리 잔류주민을 신원국민학교에 집결시키는 일방 진부락 일대 민가에 궁(亘)하여 방화하고 동대대의 1개중대는 대현리 동민 약 40명을 동리 앞 계곡에서 총살하고 신원국민학교에 집결시켰던 약 6백여 명 중 군경관공리 등 약 4백 명 가량만을 색출케 하고 잔여 남녀노소, 약 2백여 명을 신원지서주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교로부터 약 5백 미터되는 박산곡에서 총살하였으며 동일 역시 타중대는 덕산리 청연부락주민 약 60명의 남녀노소를 동부락 산곡에서 총살방치하고 각부락의 농우, 양곡, 의류 등을 대거 반출하였음
- . 주민을 학살한 원인
신원면 일대의 각부락민은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적정에 대하여 함구할 뿐만 아니라 식사 기타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구실하에 전기와 여한 비참한 민족사를 연출한 것임
- . 주민에게 주는 반향
1. 적성분자라고 대거학살한 주민들 중에는 적성분자도 간혹 있거니와 대부분이 양민이며 심지어는 경찰가족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차별적인 사살에 주민들은 무한한 공포심을 포지(抱持)하고 있으며 군에 신뢰감이 전무한 현상임.
- . 군군비행에 대한 여론

신원면 지구작전부대에 대한 주민의 여론은 대단하며 특히 부녀자에 대한 강간사건 및 주민에 대한 물품강요 강탈 등 심지어는 주민의 소유재산을 약탈하여 주민에게 강매하는 처사 등에 대하여 국민은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 현상임

一. 사살사체처리 경과

단기 4284년 3월 10일경

전기(前記) 신원면 과정리 중유리 급 대현리에서 사살한 주민의 사체를 제9연대 한중령은 부하 1백여 명을 출동시켜 그 중 약 40명은 고지에 은밀히 배치하여 지방인의 출입을 경계케 하고 약 1백 명 가량의 인원으로 서 현지에 방치된 양민의 사체를 현지로부터 약 2킬로 떨어진 계곡에 은밀히 암장하였음.

차(此) 작업도중 국회의원 급 지방유지 등이 현지를 시찰코자 한바 배치하여 있는 경계병의 다발총성에 의하여 동 일행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함.

이 보고서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첫째, 피살주민을 ‘양민’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목부터 ‘양민’사살이라 되어 있으며, 피살주민의 ‘대부분이 양민이며 심지어는 경찰가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살방식은 ‘무차별’적이었고, 그 때문에 군의 처사에 대하여 ‘신뢰감이 전무’하고 심지어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 이는 사망주민 대부분이 적성분자이고, 여론은 하등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경찰보고와는 전혀 다른 보고인 것이다. 둘째,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를 훨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사건장소는 박산곡 한 곳이 아니라, 덕산리, 대현리, 과정리 세 곳이며, 일시도 11일에 한한 것이 아니라 10일 및 11일이라고 보고한다. 덕산리의 살상이 2월 9일이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시간 및 장소가 거의 진실이다. 셋째, 사망자의 숫자는 덕산리 약 60명, 대현리 약 40명, 박산곡에서 약 250명 등 350명에 이른다고 세세하게 적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색출하여 죽였다는 점도 상세하다. 넷째, 사살한 군부대가 피살주민의 사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은밀히 암장’했으며, 그것은 진상을 은폐하려는 기도였음을 적시하고 있다.

(3) 3부 합동조사(1951. 3. 16~3. 17)

행정부 내에서 개별적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내무부·법무부·국방부 장

관에게 보고되고, 그 내용이 또한 국무회의에서 다투어지면서 3부합동현장조사를 3월 16, 17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내무부차관이 주심이 되고, 법무부 검사, 도내무국장, 경찰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거창경찰서장택에서 각 증인을 심문하는 식으로 문답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사실상 현장에 대한 장악력을 갖고 있던 국방부 측의 의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다. 국방부 측의 구체적인 공작내용은 지금까지 밝혀져 있지 않았지만, 이번에 입수한 재판자료 중에서 김종원 대령(경남지구 계엄민사부 부장)이 1951년 3월 20일 작성한 내부보고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김종원, 「거창사건 현장합동조사 복명지건 보고」(1951. 3. 20)²¹⁾

단기 4284년 3월 20일

경남지구 계엄민사부

부장 육군대령 김 종 원

헌병사령관 각하

거창사건 현장 합동조사 복명문건 보고

수제건(首題件)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1. 일시: 단기4284년 3월 16, 17 양일간
2. 편성: 내무부차관, 법무부 검사 2명, 도내무국장, 경찰국장, 건설국장 외 수원(隨員) 10명
3. 내용
 - (1) 단기 4284년 3월 16일 오전 9시 30분 조사단 일행은 부산을 출발하였으나 법무부장관 명을 받은 검사 2명은 14일 선발로 거창에 도착하여 경찰서 사찰주임, 신원지서원, 구장, 지방유지로부터 청취 등을 하고 있었으나 그외 조사원은 함양에서 1박후 익일 거창에 9시 5분 도착하였음.
 - (2) 내무부차관이 주심이 되며 거창 경찰서장택에서 각 증인 신문식으로 참고사항을 문답하였음.
 - (3) 신문을 받은 자는 제9연대 제3대대와 작전행동을 직접 감행하고 부락민을 교정에 집합후 양민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발한 경찰(형사) 1명으

21) 자료집(Ⅲ), 20~21쪽.

로부터 청취한 바이나 조사의 주목적과 착안은 유아 및 노인 처치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답을 하등에 접촉되지 않은 답변으로 군 기정방침으로 14세 미만 60세이상 노인은 제외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4) 신원면장과 구장 3명도 신문받았으나 전부가 이구동성으로 군에 유리한 답변을 하였음.
- (5)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전계획에 의한 진행으로 적정(敵情) 불호(不好)하다는 전제로 현장조사는 중지하였음.
- (6) 현장도 사전 완전처치하였으므로 하등 불안한 점이 전무함.
- (7) 17일 오후 5시 개략 조사를 완료하고 산청에 도착하였으나 국회의원을 파견공작한 결정으로 하등 이상 무함.
- (8) 이에 대한 종합보고는 내무부차관으로부터 조사단 연명날인 후 보고할 것이나 이 사건에 관하여는 군이 조금도 불리한 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고 이에 보고하나이다.

이 합동조사에서 군은 ‘기정방침대로’ 밀어붙여 ‘군이 조금도 불리한 점이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증인을 선별하고, 증인답변을 조정했으며, 모두가 군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가능했다. 또한 현장조사를 ‘敵情 不好’하다는 이유로 방해했으며, 현장도 완전 처치하여 증거인멸시켰음을 뽐낼 수 있었다. 이러한 합동조사를 통해 군은 사건을 조작할 수 있는 준비와 예행연습까지 끝낸 셈이며, 군에 불리한 점을 막아낼 수 있다는 확신은 뒤의 국회 현장조사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공작으로 이어지게 된다.

(4) 국회의 현지조사 및 거창사건결의안 가결

신중목 의원의 폭로 직후인 1951년 3월 30일, 국회는 「거창사건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조사단은 김종순(단장)·박정규·변진갑·이병홍·김정실·김의준·신중목 등 7인으로 구성되었다. 국방부 측의 은폐기도에 맞서, 국회의원에 게 비공식적 제보가 잇달았다. 제보에는 영관급 장교는 물론이고 장성급 장교의 제보도 이어졌다.²²⁾

국회조사단은 국방·내무·법무 대표와 합동으로 현장조사에 떠날 준비를 했다. 명칭은 합동조사단이지만 어디까지나 국회가 위주이고, 3부에서는 명목상 대

22) 서민호 증언, **민족의 증언**, 215~216쪽.

표를 차출했을 뿐이다. 조사단은 4월 6일 부산을 출발하여 당일 저녁에 거창에 도착하였다. 4월 7일 신원면으로 가는 길목에 그 유명한 사건, 즉 공비로 위장한 군인들이 국회조사단에 발포한 공작사건이 일어났다. 공비(?)에 피습당한 조사단은 현장방문을 할 수 없었으며, 대신 거창읍에서 약식조사가 진행되었다. 논의의 초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사망자는 통비분자, 적성분자, 이적행위자인가 아니면 양민인가.

둘째, 사망자는 187명인가, 283명인가, 517명인가.

셋째, 사망자 중에 노인, 어린이, 부녀가 포함되어 있었는가.

넷째, 사망은 학살인가 아니면 ‘간이재판에 의거한 즉결처분’인가.

다섯째, 사망자의 태도는 어떠했으며, 사건후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현장의 분위기는 사건발생지에 대한 접근기회 및 증인들을 협박·장악²³⁾하고 있던 국방부 측의 의도대로, 그것도 주로 김종원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국방부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도해갔다.²⁴⁾

첫째, 신원지역의 주민들은 사건이 발생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좌익에 가담했고, 공산계열에 가까운 행동을 해왔으며, 경찰관에게 협조해주지 않고 공비를 오히려 도왔다. 따라서 그들은 적성분자 아니면 이적행위자이다.

둘째, 2월 11일 ‘즉결처분’한 숫자는 정확히 187명이다. 하지만 전투간 죽인 사람, 부역자의 가족 등을 적개심에서 죽인 숫자 등이 약간 있어 3백 명 등의 숫자가 나올 수 있으며, 500여 명 등의 숫자는 사건발생 후 한 달이 넘어 없는 사람을 조사해보라고 하니까 그런 숫자가 나타난 것이다. 결국 즉결처분한 숫자는 187명이 맞다는 것이다.

셋째, 처음에 국방부는 노인, 유아, 부녀 중 처형당한 사람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였다가, 나중에 단지 몇 명의 부녀가 포함되었음을 시인하였다. 그 근거는 187명을 총살집행할 때 ‘여자들이 내 남편을 죽이니 나를 대신 죽여라 이렇게 대들어서 몇 명 죽어나간 일이 있다’는 정도로 양보했다. 아이와 노인은 없었다고

23) 당시 거창경찰서에 출두했던 인사는 다음과 같이 1960년에 이르러서야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당시 유주임(유봉순, 당시 거창경찰서 사찰주임으로 기여)은 증인들에게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만 진술하라”고 여러모로 협박을 했으며, 그것을 어기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 “총살시키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조선일보, 1960. 5. 13, **자료집(Ⅰ)**, 144~145쪽).

24) **자료집(Ⅱ)**, 90쪽 이하.

계속 주장했고, 그에 대한 반증은 제기되지 못했다.

넷째, 대대장은 군법상으로 장관의 명을 받아 대대장이 군법회의의 설치권한을 위임받아, 간이재판에 의거하여 즉결처분을 할 수 있다. 연대장의 작전명령에 따라 대대장에게 이동재판권한을 부여한다는 작명부록에 따라 처형한 것이다. 따라서 작명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

다섯째, 처형당할 때에도 개전의 정이 없었으며,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며 죽어 갔다. 사살은 작전상 당연한 처사일 수 있으며 별다른 불만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획된 조사형태에 대하여 몇 가지 조사상의 기본적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위장공비에 의한 조사단습격사건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만약 현장에 접근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를 했더라면, 2월 11일 뿐 아니라 2월 9일과 10일의 학살사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지도 모르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은 기대난망이었다. 둘째, 단순처형이든 법적 처형이든 간에, 모든 재판에서 최소한 있어야 할 처형자명부가 없었다.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187명이란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의원 중에도 이런 문제점을 몇 차례 지적하긴 했다. 187이란 숫자는 집행자들이 헤아려 봤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인데, 그에 대한 본격적인 이의제기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다만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취합하여 다른 숫자(그것도 정부 차원의 조사결과물이니까)를 열기설기 붙여 해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셋째, 주민과의 접촉이 없었다. 오직 군인, 경찰, 행정관리의 증언이 대다수였고, 주민의 증언도 현장 목격자가 아니어서 일방적 증언만이 행해졌다. 넷째, 어떤 종류의 문서증거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 그 결과 문제의 작명부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국회의 현지조사의 결과는 국방부의 완승으로 일단락되었다. 김종원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호언할 수 있을 정도로 고무되었다.

거창사건의 진상 명백/군에 오명입히는 자 엄벌/김대령 담²⁵⁾

헌병부사령관 김종원대령은 25일 거창사건 진상 발표에 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항간에 떠돌고 있던 거창사건의 진상은 24일 청천백일하에 공보처장이 발표

25) 국제신보 1951. 4. 26, 자료집(1), 12~13쪽.

하여 뚜렷이 난 것이다. 부락민의 대부분이 통비자이었고 심지어는 공비에게 식사숙사 혹은 아지트를 제공하고 아군경이 불리한 상태로 포위당하였을 시에는 공비들과 함께 죽창을 들고 군경에 반항한 사실 등 군은 마땅히 이러한 자를 작전간에 있어서 이적행위자로 규정하고 체포하여 군법회의에 회부한 결과 남자 187명을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의거하여 사형을 집행하였고 공비와 교전간에 있어 혹은 유탄에 맞은 약간의 부락민이 있음을 계기로 거반(去般) 시내 모신문에서는 5, 6백 명의 양민을 학살 운운하여 항간에 여론을 환기한 사실 등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과 상반된 보도로 말미암아 제일선에서 오직 국가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처자를 버리고 피투성이 흘투성이가 되어서 용감히 싸우는 장병들에게 오명을 씌워서는 안될 일이다.

국회의 현지조사는 실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극적인 거창사건에 오점을 가산했고, 나중에 국회조사단 습격을 둘러싼 은폐와 공작의 내막이 폭로됨으로써 장본인들의 지나친 기획은 결국 ‘스스로의 묘혈을 판 셈’이 되었다.²⁶⁾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결과적으로 누가 거창사건을 만들어냈고, 누가 그것의 진상규명을 은폐하려 하는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진상규명에 실패했다고, 국회가 호락호락 물러선 것은 아니었다. ‘하늘아래 둘도 없던’ 제2대 국회는 인권옹호를 위한 이론가와 전사들이 적지 않았기에, 조사 결과를 근본적으로 뒤집지는 못했지만, 그 조사 속에서도 법률적·사실적 문제점을 치밀하게 짚어나갔다.

김의준 의원: 우선 저가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은 간이재판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방부측에서 말하기는 이 간이재판은 즉 작전부록 작전명령에 의거해서 연대장 제11사단 9연대 제3대대장인 한동석소령이 이동군법회의의 설치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그 간이재판에 의거해서 재판언도를 해가지고 사형을 집행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세히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여쭙 것 같으면 고등군법회의의 설치권한은 여단장 이상의 상급장관 이상이 고등군법회의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 제가 생각하기는 아무리 작전중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이것이 명문이 없는 이상 헌법으로 우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명령으로 이 제정을 한다고 ... 적어도 사형의 처단까지 하는 재판을 이렇게 약식으로 한다는 것은 ... 그 설치에 대해서는 저는 법률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26) 민족의 증언, 220쪽.

고 생각이 됩니다. 뿐더러 계엄하의 고등군법회의의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재판관은 장교 3인 이상이라야 되고 그 중에 한사람이 법무관이 되어야 한다는 아주 절대필요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는 법무관이 끼어 있지 않습니니다. 장교는 3인 이상이였다 할지라도 법무관이 끼어 있었다는 하등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의 구성에 저는 결함이 있다고 보고 또 적어도 재판을 하는데는 소송을 진행하는데는 소송수속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까 어느분께서 질문이 계시었지만 우선 검찰관의 기소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피고인에 대한 성명이든지 연령이든지 주소 이런 것이 다 명기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기소사실에 대해서 즉 범죄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또는 그들의 진술하는 요지서라든지 그 외에 어떤 증거를 채택해서 범죄증거가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재판에 있어서는 그 소송에 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판결을 언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언도한데 대해서 고등군법회의의 규정을 볼 것 같으면 ... 계엄하 군법회의의 규정을 볼 것 같으면 고등군법회의를 설치하는 권한을 가진 장관이 그 판결에 의한 언도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이를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 승인했다는 그 증거는 아무 것도 흔적이 없습니다.²⁷⁾

이종영 의원: 길게 얘기할 것 없어요. 각본을 썼어요. 시방 나는 각본썼다고 봅니다. 먼저는 하나도 없다고 안했습니까. 이런 일이 인제는 국회에서 조사한 덕분에 나왔습니다. 187명이라는 국방부의 책임지는 숫자가 하나 나왔어요. 간이재판을 했든 안했든 죽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법률에 그렇게 죽이는 법률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수도 안 세어보고 간이재판을... 김종원 대령이 애를 많이 써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모두 수상스럽습니다. 총소리가 어디서부터 났는지 여러 가지 수상한 점이 많단 말이에요.²⁸⁾

엄상섭 의원: 여하간 187명이라는 사람을 학살했다는 사실, 이것은 국방부 측에서 내는 그것을 그대로 다 우리가 인정하면 이것은 최소한도의 수일 것입니다. ... 그러면 그 다음에 간이재판이라는 말이 있는데 국방경비법에서 군법회의라는 것은 세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고등군법회의, 보통군법회의, 약설군법회의의 세 가지인데 간이재판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약설군법회의를 간이

27) 제10회 국회60차회의 중 비공개회의속기록(단기 4284년 4월 18일 상오 11시 40분 개의), 이 비공개회의 속기록은 1960년에 와서야 처음 공개되었다. 경향신문 1960. 5. 20. 조간 3면. **자료집(1)**, 231~232쪽.

28) 경향신문 1960. 5. 21. 석간 3면, 경향신문 1960. 5. 22. 조간 3면. **자료집(1)**, 248쪽 이하.

재판이라고 하면 사형은 여기에 언도 못합니다...그 죽인 일이 학살이고 법에 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지금 조사단이 보고하는 걸 가지고도 충분한 것이에요.²⁹⁾

요컨대 국방부측의 주장, 즉 이동군법회의에 의한 약식처형이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형사재판절차에 따른 처형도 전혀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조사단에 대한 충질도 ‘수상스럽’고 ‘각본’에 짜맞춘 것임을 밝혀내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러한 국회의 논리는 1951년 5월 14일 「거창사건조사처리에관한결의안」을 가결시키는데 이르게 된다.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창사건에 의한 정부와 국회의 조사가 그 전말이 대동소이하나, 차이점을 검토한 즉,

① 187명의 처형은 고등군법회의에서 행한 것이라 하나 법무관의 출정이 없는 재판이었으며, 피고인의 명단도 전혀 없으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실재할 수 없는 비합법적인 行刑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② 사형집행을 개별적으로 행하지 않았으니 이는 현지의 실정이 수시수처에 출몰하는 공비의 토벌이 계속 중이었으며, 그 불의의 역습을 진압하는 나머지에 행하여진 비상조치의 행형이라고 상상할 수는 있으나, 그 행형의 방법이 심히 부당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전술한 사건은 포화무도하고 出沒非常한 공비를 토벌하는 전투지구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전투 사정이 개재하였으리라는 점은 시인하는 바이나, 현정의 궤도인 민주정치의 달성 보장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휘감독의 직책이 있는 사단장 이상의 책임자와 현지의 행형집행자를 준엄처단 또는 징계함으로써, 刑政의 과오를 시정 천명해야 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언하는 바이다.³⁰⁾

(5) 재판이 가능했던 이유

앞서 살펴보았지만, 거창사건의 재판이 가능했던 배경으로는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유족들과 관련인사들의 폭로의 노력이다. 다른 지역의 유족들은 1951년

29) 앞의 비공개회의속기록, 경향신문 1960. 5. 25. 조간 3면. 자료집(Ⅰ), 257~258쪽.

30) 자료집(Ⅱ), 35쪽, 28쪽.

의 국면에서 중앙정계를 향한 접촉을 하지 못했거나,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거창지역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노력을 했고, 그 상당부분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헌병사령부, 내무부, 법무부, 국회의원과과의 초기접촉의 시도는 그 일부만이 밝혀져 있는 실정이다.

둘째, 당시 내각은 전시연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국방부장관 신성모가 이승만 대통령의 충성분자라면, 내무부장관(조병옥), 법무부장관(김준연)은 나름대로의 정치기반을 갖고 있었으며, 신성모의 활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내각내의 분열상은 거창사건 및 국민방위군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결정적인 파열음을 내게 되었고, 결국 1951년 4월 24일 세 장관의 동시 사임을 초래했다.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당연히 사임해야 할 국방장관 뿐 아니라 거창사건의 진상규명을 주장했던 다른 장관까지 동시사임시킨 것이다.³¹⁾ 그러나 신성모의 군부 및 국내정치로부터의 후퇴는 거창사건의 재판화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제거됨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뒤이어 이시영 부통령의 사임³²⁾은 이승만 세력의 도덕적 정당성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이후 재판화를 막을 만한 정치적 힘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셋째, 거창사건의 재판화는 무엇보다 국회의 공으로 돌려져야 할 것이다. 국회는 거창사건을 대외적으로 폭로했으며, 조사를 강행함으로써 군부가 조사방해를 위한 무리수를 두도록 만든 셈이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후에도, 관련자의 처벌 및 징계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국회의 활동이 없었더라면 거창사건이 그 정도의 정치적 격랑을 초래하고 사법처벌에 이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넷째, 군 내부의 제보 및 진상규명의 노력이다. 거창사건을 저지른 것도 군대였지만, 군대 내에서는 익명의 제보 및 진상조사를 이끌어갈 역량도 동시에 존재

31) 이 대통령은 당일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전시하에 있어서 정부의 장관들은 잘 협력해서 어려운 고비를 극복해야 하는 법인데, 거창사건으로 인해 내무, 법무, 국방 등 요직을 맡은 3부장관이 서로 협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체면이 국제적으로 손상됐으니, 이번 기회에 신성모 국방장관과 함께 내무, 법무 양 장관도 즉시 사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동시사임을 하도록 했다고 한다(서병조, 『정치사의 현장』, 중화출판사, 1981, 282쪽). 그에 대해 조병옥은 “거창사건에 대해서도 엄연히 있는 사실을 없다고 복명서를 꾸며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사건조사의 시일을 천연하였던 까닭에 국가위신이 손상되었고 거창사건을 발생케 한 장본인이 군인인 까닭에 그 책임은 오로지 신국방장관에게 있다”고 하면서 국무회의장을 퇴장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국제신보 1960. 5. 17, **자료집(1)**, 195쪽).

32) 이시영의 사임은 1951. 5. 10. 사임서의 제출과 함께 이루어졌다. 김재형, 앞의 글(1962), 166~167쪽.

하고 있었다. 거창사건을 저지른 장본인인 제11사단만 하더라도 1951년 3월의 보고서는 군수뇌부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거창사건을 둘러싼 갈등은 일정부분 군내의 파벌 간 대립에 연유하는 바도 있다. 신성모의 해임 이후 이기붕 신임 국방장관과 이종찬 참모총장은 재판화를 위한 의지와 함께 재판 방해에 대한 방과제의 역할을 수행했다.³³⁾

다섯째, 외신의 보도 등도 일정한 작용을 했다고 보여진다.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에 대서특필되었다는 것이 통념처럼 퍼져있으나, 필자가 여태껏 조사한 바로는 ‘대서특필’된 내용은 보지 못했으며, 한국의 정치적 갈등에 대한 언급에서 지나가는 식으로 다루어진 내용을 하나 확인했을 뿐이다.³⁴⁾ 그러나 외신 등에 널리 보도되었다는 소문과 함께 미국의 작전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이 퍼졌고, 그로 인한 압력을 받지 않았나 짐작할 수 있다.

3. 수사 및 증거수집상의 쟁점과 공과

(1) 재판의 경과

먼저 1951년의 재판 경과를 일지식으로 정리해보기로 한다.³⁵⁾

[1951년]

5. 13. 국방장관 이기붕, 육군참모총장에게 거창사건 책임자(9연대 3대대장)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과한 후 그 결말을 보고하라는 문서명령 내림.
5. 16. 헌병사령부 윤우경 육군중령, 제11사단장(최덕신), 연대장(오익경), 대대

33) “이기붕 국방이나 이종찬 참모총장은 소신껏 처리하라고 해서 정말 내 판단에 따라 누구의 압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김부남(당시 육본 법무감실 법무관 소령, 거창사건 군계 검찰관, 『민족의 증언』, 238쪽).

34) BICKERING IN KOREA HINDERS AIM OF U. S.

Particularly damaging to the Rhee cause was the immediate reason for the Cabinet fight. This was brought on by the disclosure that South Korean troops and police had massacred hundreds of South Koreans on the ground that they aided Communist guerrillas. As a result of the killings in Kochang on Feb. 12, three ministers, including the powerful Defense Minister, were forced out of the Cabinet. A fourth has since resigned and the resignation of the Vice President was refused by the Assembly after a hot row yesterday. (NEW YORK TIMES, 5/11/1951, 3면)

35) 이 일지는 **자료집(Ⅲ)**에 의거하여 정리된 것이다.

장(한동석)을 소환취조코저 하오니 (헌병사령관에게) 재결 소청함.

5. 27. 한동석 引致하여 5. 28. 구속영장 발부받아 구속.
5. 31. 헌병사령관(최경록), 한동석 죄상에 대한 조사결과 총참모장에게 보고.
6. 6. 헌병사령부 조사계장, 헌병사령관에게 오익경·이종대 조사결과 보고
6. 10. 이종대 임의공술 청취서
6. 15. 한동석에 대하여 구속기간연장신청(6. 25.까지). 총참모장의 연장허가.
7. 6. 박세복 증인신문.
7. 8. 오익경·한동석·이종대에 대하여 예심조사
7. 10. 법무감이 총참모장에게 오익경 구속에 대한 재결 요청: 오익경이 ‘작전 지역 내에서 이적행위자는 즉결하라’는 작명 발령한 것이 명백하며, 그 이유로 거창사건 발생한 것이므로 신병구속 필요하다는 취지.
7. 18. 오익경 변호인선임계 제출(김장섭을 변호인으로)
7. 28~7. 30. **제1차 군법회의** 대구고등법원 법정에서 개정.
‘작전명령 제5호’ 변조 여부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8월 5일까지 휴정.
8. 5.~8. 6. **제2차 군법회의** 대구고등법원 법정에서 개정.
증인신문. 검찰관측 증인 육군중령 한철의 진술에 의하여 작명 불법수정 및 합동조사방해에 관하여 김종원이 관련된 사실이 판명되며, 피고인 오익경의 진술에 의하여 합동조사방해에 관하여 김종원이 관련된 사실이 판명. 김종원은 작명 불법수정 및 합동조사방해를 단독으로 결의감행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였음.
또 검찰관측 증인인 육군소령 전월봉의 진술에 의하여 합동조사방해에 관하여 김종원이 관련된 사실이 판명, 육군소령 최영두는 한철의 지시에 의하여 합동조사방해를 감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8. 6. 이종대 군법회의 회부. 오익경 작명불법수정에 대하여 군법회의 추가회부.
8. 13. **제3차 군법회의** 대구고등법원 법정에서 개정.
오익경은 작명불법수정에 관하여 김종원과 신성모가 관련된 사실을 재진술하였음.
8. 25. 김종원 체포되었을 것이라는 이기봉 국방장관의 언명³⁶⁾
9. 9. 법무감 총참모장에게 김종원에 대한 신병구속 상신.
상신이유: “거창사건이 발생한 후 동사건 처리를 유리하게 한다는 구실하에 전 국방장관 신성모와 공모한 후 제11사단 제9연대 작전명령 제5호 부록을 불법고의로 수정하고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방해한 사실 등이 명백히 입증되는 바, …현재 상황에 당하여 신병을 구속함이 절대

36) 국제신보 1951. 8. 25. “김대령 체포되었을 터”, **자료집(1)**, 87쪽.

필요함.”

9. 9. 예심조사(제4회, 이종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5회, 한동석 피고인에 대하여)
9. 10. 김종원 구속송치³⁷⁾
9. 10.~9. 11. **제4차 군법회의** 제5군단 법정에서 개정.
김종원은 작명불법수정 및 합동조사방해에 관한 신성모와의 공범관계를 시인하였음. 관선변호인 조승각으로부터 신성모를 김종원에 대한 증인으로 신청하였던 바, 재판장 육군준장 강영훈은 위 증인신청을 채택한 후 위 증인출정시까지 휴정을 선언하였음. 그에 따라 공판은 무기연기됨.
9. 11. 김종원에 대한 보석신청서 및 진단서 제출(김종원 변호인 전봉덕)
9. 27. 육군본부 법무감실에서 증인신문(함양경찰서 유립지서 송호상, 배사순) 10월 중. 신성모 주일대사에게 소환장 전달, 나올 수 없다고 하여 서면질문을 보내 서면대답을 받음.³⁸⁾
10. 17. 제75차 국회 본회의에서 김양수 의원 외 50의원의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어 「주일 신대사 소환에 관한 건의안」을 77 대 0으로 가결함.
11. 10. 육군총참모장 이종찬 국방부 장관에게 『이적행위자 처벌에 관한 논의지견』 보고. ‘오익경·한동석에 대한 살인피고사건(세칭 거창사건)에 관하여 4차에 걸쳐 공판 개정하였으나 작명5호부록 불법수정(공문서 위조), 합동조사단방해(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증인인 전국방부장관 신성모의 불출정으로 인하여 결심치 못하였음’을 보고.
12. 15. 구형공판
김종원(징역 7년), 오익경(사형), 한동석(사형), 이종대(징역 10년)
12. 16. **판결선고**
김종원(징역 3년), 오익경(무기징역), 한동석(징역 10년), 이종대(무죄)

(2) 수사와 증거수집에서 평가할 점

이러한 재판경과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뚜렷이 알 수 있다.

첫째, 피의자로서 학살의 실행책임자인 대대장(한동석)이 먼저 수사·구속되었으며, 이어 연대장(오익경)이 학살명령자로 수사구속되었고, 소대장(이종대)이 현지실행자로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이어 김종원이 조사활동방해 및 작명수정

37) 민족의 증언, 235쪽.

38) 국제신보 1951. 10. 19. “신씨 소환 경위, 변장관 국회서 답변”, 107쪽.

의 책임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작전명령 제5호 부록의 문제, 국회의 조사 활동 방해사실, 작명수정의 문제 등 거창사건의 진상규명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국회 및 정부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정치적·행정적 조사와 검찰·법원의 사법적 차원의 수사가 질적으로 다를 수 있으며, 후자가 훨씬 진실에 육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재판에 회부되는 순서도 상당한 합리성을 띠고 있다. 즉 직접 현장에서 실행 책임을 지고 있던 대대장을 신문하고, 그 신문사항을 토대로 연대장 및 소대장의 책임을 추궁하고, 연대장에 대한 신문을 토대로 작명수정과 관련하여 김종원을 기소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수순은 증거를 추적하여 혐의가 드러날 경우 하나씩 책임을 묻는 식으로 되었으므로, 어떤 기획적 목적을 가진 수사가 아니라 진실수사의 정도를 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강력한 수사체제의 가동과 엄벌적 분위기는 결국 진실을 털어놓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짐을 볼 수 있다.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① 신원면 학살의 경과와 원인

거창에서의 토벌작전과 학살의 직접적 원인제공은 <제11사단 9연대 작전명령 제5호>에서 비롯된다. 이 작전명령은 언론 등에 일부만 불확실하게 공개되었지만, 이번에 재판자료를 입수함으로써 그 전문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워낙 중요한 것이므로, 먼저 그 전문을 보자.³⁹⁾

取扱軍事極秘

步十一師九聯作命第五號

步兵第十一師團九聯隊本部

慶南

咸陽

地圖 五萬分之一

檀紀四二八四年二月二日一二,〇〇

一. 敵情

1. 聯隊作戰은 最後段階로 突入하였으며 過般 數次에 걸친 我軍의 猛烈한

39) 자료집(Ⅲ), 8~9쪽.

攻撃에 의하여 殲滅된 敵은 그 分散兵力을 集結하여 別紙透明圖와 如한 地域內에 潛伏中이며 □□治安을 攪亂할 企圖를 갖고 現在 行動中에 있음

2. 別紙, 軍隊區分參照

3. 省略

二. 聯隊는 全主力으로써 檀紀四二八四年 二月四日 一二,〇〇부터 檀紀四二八四年 二月八日 二四,〇〇까지 五日間에 걸쳐 此地區殘敵을 完全包圍殲滅하려 함

三. 1. 第一大隊長은 美第十四工兵大隊 B中隊 道路補習修工事 警護에 任하고 있는 一個 中隊兵力을 除外한 全兵力을 指揮하여 檀紀四二八四年 二月六日 〇六,〇〇 咸陽을 出發하여 別紙透明圖와 如한 作戰을 展開하라

2. 第二大隊長은 五中隊를 除外한 全兵力을 指揮하여 檀紀四二八四年 二月四日 一二,〇〇 河東에서 行動을 開始하여 別紙透明圖와 如한 作戰을 展開하여 第五中隊는 檀紀四二八四年 二月五日 一八,〇〇 第一次 攻擊開始 總集結後부터 作戰에 參加케 하라

3. 第三大隊長은 檀紀四二八四年 二月五日 〇六,〇〇부터 全兵力을 指揮하여 別紙透明圖에 依한 作戰을 展開하라

四. 行政事項 1. 補給事項

(가) 各大隊는 六日分의 携帶食糧과 主副食을 各自 携帶케 하라

2. 彈藥事項

(가) 彈藥은 晉州彈藥補給所에서 補給하라

3. 輸送事項

(가) 聯隊輸送官은 檀紀四二八四年 二月六日 〇六,〇〇까지 第一大隊兵力 移動에 必要한 車輛을 配當하라.

4. 醫務隊長은 山淸(CQ九八,一九)에 聯隊救護所를 設置하고 患者輸送에 萬全을 期하라.

五. 通信事項

別紙通信計劃表에 依하여 實施에 萬全을 期하라

六. 余는 咸陽指揮所에 在함

聯隊長 陸軍中領 吳 益 慶

下達法

口頭下達後 謄寫配布

配布先 乙

作命 第五號 附錄

環急한 部隊出動에 際하여 司令官閣下로부터 左記와 如한 注意事項 有하옵기 茲以 下達하오니 徹底한 履行으로 □號作戰에 期待한 바 어김없는 成果로 當部隊 名譽昂揚에 積極努力할 事

注意事項

一. 作戰中 大隊長은 作戰地域에서 利敵行爲者를 發見時는 卽決하라

二. 食糧家屋을 確保하라

駐屯地의 確保는 勿論이려니와 占領地에 在敵家屋은 必히 破壞하여 다시금 使用 못하게끔 할 것이며 獲得한 食糧은 敵에게 奪還되는 等 事 없게끔 後送 其他方法으로 始終 此를 確保하라

三. 企圖를 秘匿함은 戰鬥 그 影響이 甚大함 些少한 事件으로 發砲하며 部隊의 企圖를 暴露시키는 것은 利敵行爲라고 認定하지 않을 수 없음 故므로 可及的 必要以外 銃聲을 내지 말라

四. 凍傷을 豫防하라

溫和한 地域에서 寒地에 出動하여 凍傷이 發生하기 容易함으로 此를 留意하여 衛生에 注意하라

五. 燒火節制를 徹底히 하라

夜間寒氣로 因하여 燒火함은 可하나 此 火點으로 因하여 部隊의 位置를 暴露함은 또한 作戰에 支障을 招來할 것이니 徹底한 節制로써 敵來襲에 完璧한 對備를 하라

六. 落伍者 處置는 迅速 慎重히 하라

部隊討伐間의 落伍者將兵은 迅速히 上部에 報告하여 嚴格慎重한 處置를 할 것이며 各級指揮官은 特히 戰鬥間 落伍者發生함을 徹底히 團束하여 作戰遂行에 遺憾없기를 期하라.

연대 작명은 1951년 2월 2일 12:00에 내려졌다. 연대의 전 주력을 동원하여 2월 4일 12:00부터 2월 8일 24:00까지 5일간에 걸쳐 작전지구(거창, 함양, 산청)의 殘敵을 완전포위 섬멸하는 작전이었다. 작전시 수행할 내용은 주의사항에 적시되어 있다. 첫째, “작전중 대대장은 작전지역에서 이적행위자를 발견시는 즉결하라”는 것이었다. 둘째, 식량가옥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확보의 방법으로 “점령지에 在敵家屋은 必히 파괴하여 다시금 사용 못하게끔 할 것”이고 “식량이 적에게 탈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것이었다. 요컨대 토벌작전 지역 내에서의 인명·가옥·식량을 즉결처분·파괴 혹은 확보하라는 것이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를 견벽청야작전이라 했던 것이다.

그 중 가장 핵심인 “이적행위자 발견시는 즉결하라”는 부분을 좀더 살펴보자. 이번에 필자가 확보한 문건에도 그렇게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제3대대장 한동석은 자신이 서면수령한 작명에는 “미복구 지대의 적 수중에 들은 주민은 총살하라”고 되어 있었다고 주장⁴⁰⁾하고 있다. 그리고 작전기간 내인 2월 6일 신원면 과정리에 도착하여 “작명대로 과정리 주민을 총살하려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지 경찰관들이 걱정이 없다고 하므로 경찰에게 주민처리를 일임하고 산청에 도착하였는데, 2월 7일 연대장을 만나 “도중 주민을 총살치 안한 건에 대하여 질책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2월 8일 “다시 구두로 작전명령”을 받았다고 하며, 그 내용은 원경로, 다시말해 온 길을 그대로 돌아가면서 “거창에 복귀하되 도중 공비를 포착섬멸하고 전술한 미복구지대의 적수중에 들은 주민은 총살하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원작명의 내용에 대해 異見이 나타나고 있다. 연대장(오익경)은 “작전중 대대장은 작전지역에서 이적행위자를 발견시는 즉결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 반면,⁴¹⁾ 대대장(한동석)은 “미복구 지대의 적 수중에 들은 주민은 총살하라”고 기억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어느 쪽 이야기가 진실일까. 이번에 입수한 재판자료에서 작전명령 제5호의 전문은 오익경의 진술대로 되어 있다. 소대장 이종대의 진술도 오익경의 편이다. 그런데 한동석을 편드는 진술이 훨씬 많다. 첫째, 헌병사령관 최경록은 「거창사건 책임자 조사지건 보고」(1951. 5. 31)를 보면 작전명령과 관련하여 한동석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⁴²⁾ 둘째, 상이한 두 주장과 관련하여 김종원의 진술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김종원에 대한 기소사실은 두차례에 걸친 수정을 담고 있으며,⁴³⁾ 거창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작명을 한차례가 아니라 2차에 걸쳐 수정했음을 다음과 같이 시인하고 있다.⁴⁴⁾

거창 사건 군법 회의 10일 하오공판은 예정대로 오후 2시 정각부터 개정되

40) 신문조서: 한동석(1951. 5. 28), **자료집(Ⅲ)**, 30쪽.

41) 소대장 이종대는 연대작명 제5호 부록을 “작전지역 내의 이적행위자를 발견시는 즉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다. “미복구지대의 적수중에 들은 주민은 총살하라”는 지시를 본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없다고 답하고 있다. 청취서: 이종대(1951. 6. 10), **자료집(Ⅲ)**, 40~41쪽. 작명 내용에 대하여는, 이종대는 오익경과 같은 입장의 진술을 한다.

42) **자료집(Ⅲ)**, 49쪽.

43) 조선일보 1951. 9. 13, **자료집(Ⅰ)**, 96쪽.

44) 서울신문 1951. 9. 13, **자료집(Ⅰ)**, 94쪽.

었다. 먼저 피고 김종원대령에 대하여 죄과 제1 및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찰관측으로부터 직접신문이 있었는데 김대령은 그 답변에서 제9연대장 명령 제1항의 「적의 손에 있는 사람을 전원 총살하라」운운을 「작전중대장은 작전지역에서 이적행위자를 발견시는 즉결하라」고 수정케 하고 또다시 「신원 작전에 참가하는 대대장은 이동 군법회의의 설치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이적행위자로 판명되는 자는 간이재판에 의거하여 현지 집행하라」고 수정시켰다는 기소 사실에 대하여 이는 자기가 명한 것이 아니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성모씨가 자신의 불법임을 알고 수정하라고 명한 것이라고 하며 자기는 장관의 부하로서 장관의 의도를 받들어 이를 전달했을 따름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김종원의 진술은 원작명은 한동석의 진술과 일치한다. 김종원의 진술에 따르면, 오익경의 진술은 1차변조된 것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종대의 진술은 공판이 개시되기 전,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지시받은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김종원과 한동석의 변호인들도 원작명이 ‘적의 손에 있는 사람은 전원 총살하라’는 문구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⁴⁵⁾ 검찰관들의 논고에서도 ‘적의 수중에 있는 사람은 전부 총살하라’는 것을 원작명의 문구라고 하고 있다.⁴⁶⁾ 김종원의 변호인은 “작전전문가가 볼 때에는 몰라도 일반국민이 볼 것 같으면 오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2차에 걸쳐서 작명을 수정하였다고 봅니다”⁴⁷⁾고 하여 김종원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함을 확인해주고 있다.

판결문을 요약한 고등군법회의판결확인(1952. 1. 14)에서 작명부록을 ‘적의 손에 있는 사람은 전원 총살하라’고 명령했다고 정리하고 있다.⁴⁸⁾

이러한 기록을 평가해본다면, 우선 작명이 한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되었다는 김종원의 진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내용상으로 볼 때 ‘이적행위자 즉결’은 굳이 작명변조를 필요로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민전원총살’의 작명은 타인이 보기엔 작명발령자 및 군부에 대한 비난을 크게 가져올 소지가 있기에 작명수정의 필요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헌병대의 보고서, 변

45) 김종원의 관선변호인 조승각 변론, **자료집(Ⅲ)**, 151쪽; 한동석의 특별변호인 김동섭 변론, **자료집(Ⅲ)**, 160쪽.

46) 검찰관 김부남 논고, **자료집(Ⅲ)**, 162-163쪽; 검찰관 김태청 논고, **자료집(Ⅲ)**, 168쪽.

47) **자료집(Ⅲ)**, 153쪽.

48) **자료집(Ⅲ)**, 179쪽.

호인 및 군검찰관의 변론과 논고, 마지막으로 판결문에서 모두 ‘미복구지대의 적의 수중에 있는 사람은 전부 총살하라’는 것을 원작명의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다. 요컨대 원작명은 ‘미복구지대의 적의 수중에 있는 사람은 전부 총살하라’는 것이었으며, 사건이 문제된 후 김종원이 신성모의 의중을 헤아려 일차 변조한 작명이 ‘작전중 대대장은 이적행위자를 즉결하라’는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부분은 실제 학살의 책임을 누가 더 많이 져야 할 것인가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작명이 “주민총살”의 문구였다면 연대장의 책임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며 대대장은 재량여지가 없는 명령을 따른 죄 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로 대대장이 재량권을 발동하여 2월 6일(실제 일자는 2월 5일로 생각된다) 조우한 주민을 적이 아니라 보아 죽이지 않았다가 2월 7일(실제 일자는 2월 6일로 생각된다) 연대장으로부터 작명대로 하지 않았다고 심한 질책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연대장은 2월 5일 죽이지 않았던 신원면의 주민들을 즉결하라는 명을 재차 내렸고, 그 명령대로 하다보니 신원면의 대학살이 빚어진 것이다. 반면 작명이 “이적행위자 즉결”의 문구였다면, 모든 주민이 자동적으로 이적행위자는 아닐 것이므로, 대대장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주민을 무차별 학살하게 된 책임을 더 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발견된 작명 제5호의 문구는 “이적행위자 즉결”로 되어 있으며, 군검찰관 역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연대장은 2월 6일의 질책 및 후속명령(원경로로 복귀하면서 작명대로 하라는 것)의 내용으로 볼 때, “이적행위자=미복구지대의 주민 전체”로 이해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작명의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든간에, 연대장 및 대대장 모두 “미복구지대의 적의 수중에 있는 주민은 총살하라”는 것으로 작전을 이해하였고, 그렇게 결국 실행했음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재판자료를 통해 드러난 또하나의 주요사실은 작명 제5호에 이어 제6호, 제7호가 이어 발동되었다는 것이다. 헌병사령부에서 「거창사건 책임자 조사지견 보고」(1951. 6. 6)는 여러 측면에서 정확한 조사에 입각해 보고하고 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⁴⁹⁾

5. 경과 내용 및 총살집행에 관한 질책문제

3대대는 작명 제5호에 의거 2월 6일 6시를 기하여 공격개시하고, 신원면 과정리 경유, 동일 17시까지 오전리에 진출하면서 공비를 포착섬멸하고 계속 전

49) 자료집(Ⅲ), 54~55쪽.

진, 생초에 도착하였을 때 연대장을 상면한 바,

대대장 한동석 소령은 과정리 주민으로부터 걱정을 수집한 결과 걱정이 없는 것으로 잔류 부락민에 대한 조치를 지서에 일임하였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연대장은 수색대 또는 경찰관의 제보에 의하여 과정리에 걱정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민이 대대에 대하여 허위제보한 것이, 즉 이적행위자로 간파하였기에 대대장에 대하여 처결하지 않았다고 질책한 사실이 있고,

연대장은 생초에서 작명 제6호 「제3대대장은 연대작명 제5호에 의한 작전행동의 역순(逆順)으로 4284년 2월 8일 17:00시까지 거창에 진출하라」를 구두로 하달한 바, 신원면을 역순한 3대대는 역시 적을 발견하였다고 하고 과정리에 도달하기 전(前),

연대장은 거창경찰서의 보고에 의하여 과정리에서 공비습격으로 30여 명의 경관 및 청방대원이 악랄한 살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덕산에서 무전으로 작명 제7호를 하달 「제3대대는 작명 제6호에 의한 작전행동을 중지하고 대대지휘소를 거창군 신원면에 설치하고 신원면 오전리 일대에 출몰중인 잔비를 완전소탕하라」고 하명한 바,

3대대장은 2월 11일 9시부터 행동개시하여 과정리를 중심으로 토벌작전 결과, 황매산 산중에 잠적하였던 비무장 폭도로 인정되는 약 450여 명을 생포하고 부락에 잔류하였던 노유(기동력이 없는 자임) 약 3, 40명을 호출하여 신원국민학교에 집결시켰음.

작명 제6호는 거창으로 도로 가서 작전명령대로 이행하라는 것이었으며, 작명 제7호는 거창군 신원면에 대대 지휘소를 옮겨 설치하고 “신원면 과정리 일대에 출몰 중인 殘匪를 완전 소탕하라”는 하명을 받았던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작명 제5호에서 ‘이적행위자는 즉결하라’는 내용을 오해의 여지없이 구체화하여 신원면 과정리의 주민학살을 殘匪掃蕩의 명목으로 명하였고, 제3대대는 그대로 집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 노인, 부녀가 공비나 이적행위자일 수 있느냐 하는 원초적 물음을 제기할 여지도 없이 작전대로 집행되었던 것이다.

작명 제5호에 따른 주민·가옥·식량의 청소작업, 그 중에서도 주민살상은 언제부터, 어느 사건에까지 미쳤던가 하는 점도 규명되어야 할 주요한 과제이다. 연대장이 2월 2일 작명 제5호를 발동시킬 때, 작전일시는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였다. 제3대대의 행로는 2월 1일 거창으로 이동중둔한 상태에서 작명 제5호를 수령하였다. 제3대대장에 대한 신문조서를 다른 자료와 비교해 보면,⁵⁰⁾ 2월 4

50) 한동석의 증언은 날짜가 모두 하루씩 처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한동석의 증언

일 거창에서 연대작명 서면을 수령하였다. 그에 따라 병력 중 일부는 2월 5일 “청연동”을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행동을 개시했으며, 신원면 과정리를 경유 동 일 17시에 오진리에 진출하였다. 작명에 따를 때, 첫 주민학살지는 2월 5일 청연동, 즉 청연마을로 예정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청연마을은 당일 학살을 면했다. 필자는 청연마을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2월 5일 아침 그 부대가 마을에 도달했는데, 주민들이 환대하고 설날용으로 준비한 음식(2월 6일이 음력 설이었다)을 내어 대접하는 통해 주민을 모아 죽이려다 그냥 지나쳐 갔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⁵¹⁾ 그런 다음 부대는 과정리에 진출하였으며, 거기서도 “작명대로 과정리 주민을 총살하려 했으나, 인솔하였던 지서주임 이하 경찰관 등이 주민처리에 대하여는 일임하여 달라는 요청도 있고 적정도 없다”고 하여 경찰관에게 처리를 일임하였다. 이로써 두 번째 작전지역이었던 과정리도 요행히 당일 학살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관대하게 처리한데 대해 한동석은 다음날인 2월 6일 연대장을 만나 질책을 당하였다. 그제서야 대대장 한동석은 작명 제5호의 정확한 뜻이 “미복구 지대의 적수중에 들은 주민은 총살하라”는 것임을 알게 된다.⁵²⁾ 그 다음의 첫 작전지는 2월 7일 함양군 유림면 및 산청군 금서면이었다. 2월 7일은 작명 제5호의 범위 내에 드는 시간대이며, 작전지역이었다. 군사관계 자료를 보면, 2월 7일 3대대는 06:00~14:00 “남호리 지역작전”의 이름으로 함양군 유림면 남호리,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에서 사살 102명 등의 전과를 올렸다고 보고한다.⁵³⁾ 한편 11사단 자체의 기록을 보면 제3대대는 “2월 7일 가현리, 서주리를 향하여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잔적 소탕, 1일간의 성과가 사살 12명, 포로 7명, 적부상 174명, 박격포 1문, 기관총과 소화기 다수 노획”⁵⁴⁾임을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산청·함양사건유족회의 주장에 따르면, 2월 7일 08:00~16:30경에 걸쳐 산청군 금서면(가현마을→방곡마을)부터 함양군 휴천면(점촌마

에서 2월 5일은 2월 4일 등으로 하루씩 고쳐 정리한 것이다.

51) 2002년 10월 19일(토) 청연마을 학살현장을 방문하여 이철수 씨 생존자의 증언을 들음. 이철수씨에 따르면, 2월 5일 오전 9시~10시경 군대가 진주했고, 허기진 군인들이 각 집으로 흩어져 설날용으로 준비해둔 음식을 모두 먹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물려가 군인들의 짐을 들어주는 등 환대를 했다고 한다.

52) 이러한 3대대의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의 정리는 신문조사: 한동석(1951. 5. 28), **자료집(Ⅲ)**, 29~30쪽 등 **자료집(Ⅲ)** 전체를 통독하면서, 주민의 증언과 함께 종합 정리한 것이다.

53) **한국전쟁사료**(59권) 전투상보 참조.

54) 육군 제11사단, **화랑부대전사**, 1986, 163~171쪽 참조.

을)을 거쳐 함양군 유림면(서주마을)까지 학살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2월 7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주민에 대한 무차별 총살사실은 해당 지역의 순경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⁵⁵⁾ 이를 통해 볼 때, 작명 제5호 부록에 따른 첫 희생자들은 2월 7일 함양군 유림면, 산청군 금서면의 주민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첫 학살작업 이후 제3대대는 작명 제5호에 대한 후속명령으로써 제6호, 제7호를 수령하면서, 부대이동경로를 역순하여 2월 9일 청연마을, 2월 10일 덕산리, 2월 11일의 과정리의 학살을 주민점멸의 개념에 따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2월 9일, 2월 10일의 학살은 재판과정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요컨대 2월 9일부터 11일까지의 거창양민학살사건은 1951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작명대로 집행되었어야 할 것이, 4~6일 지체된 가운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더욱 대규모로 집행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② 학살된 주민의 성분

우선 학살된 주민들이 적성분자였던가 양민이었던가 하는 데 대하여 국회조사시에는 모두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며 죽어갈 정도로 이적행위자이며, 청장년 남성이 대부분이고 부녀는 극히 일부이며, 아동은 없었다는 식으로 일관하였다. 그리고 즉결처형은 이동군법회의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 이같이 짜맞춘 듯이 일관된 초기의 진술이 바뀌고 있다. 다음 이종대의 진술을 통해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예심조서(제4회): 피고인 이종대(1951. 9. 9)⁵⁶⁾

문 : 피고인은 이종대인가

55) 함양경찰서 유림지서의 경사 송호상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4284년 2월 7일 서주리(동부락), 자곡리(처곡부락), 화촌리(우동부락), 산청군 금서면 일대의 주민 약 2천 명을 서주리 부락에 집합시켰는데, 그 부락민 중에서 총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본인 관할지역의 주민 48명이 2월 7일 총살을 당하였는데…” 같은 경찰서의 순경 배사순의 증언도 같다. “문: 단기 4284년 2월 7일경 서주리 일대 부락민을 총살한 사실을 아는가. 답: 총살한 사실을 압니다. 문: 피살자 총수는 얼마나 되는가. 답: 총수 약 백 명 내외라고 하는데 확실한 수는 잘 모르나 본인이 근무하는 지서 관내주민은 48명입니다. … 문: 노인도 있었는가. 답: 노인은 약 60여세난 사람도 있었고 유아는 젖먹이 어린 아이도 있었습니다. 문: 此人들이 모두 피살당했는가. 답: 전부 총살당했습니다.” 위 두 증언은 육군본부 법무감실에서 1951년 9월 27일 신문한 내용이다. **자료집(Ⅲ)**, 136~141쪽.

56) **자료집(Ⅲ)**, 125~128에서 발췌.

답 : 그렇습니다.

문 : 지금까지 진술한 사실은 틀림없는가.

답 : 그렇습니다.

문 : 2월 10일 신원면 과정에서 주민들을 신원국민학교에 집결시키게 된 경위 여하.

답 : 2월 10일 8시경 과정에서 대대지휘소 대대장 한소령이 본인에게 제10중대장 지휘하에 전중대원으로 하여금 출동시키어 부락이고 산악이고 전 주민을 집결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곧 신원국민학교 교정으로 가서 제10중대장 육군중위 박중영(현재 대위)에게 이 명령을 전달하고 신원국민학교로 주민을 소개시키라고 한 즉, 12시경 대대지휘소에서 동교로 가서보니(지휘소는 학교와 약 2백 미터 거리) 신원면 주민 약 3백 명이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 지휘소로 형사 2명이 와서 있기에 그전 오후 2시경 대대장이 죽일 놈을 골라놓으라고 하여 오후 4시 선출하기 시작하고 그 후 오후 6시까지 약 2백 명이 또 집결하였으므로 도합 약 5백 명 가량이었습니다.

문 : 그 주민은 귀관이 전번 공판정에서 귀순한 자, 추격하여 생포한 자, 아지트에서 잡아온 자들이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데 여하.

답 : 그것은 허위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 주민들은 산으로 피난간 사람, 부락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무기를 소지한 사람은 전연 없었습니다.

문 : 대대장은 여하한 표준으로 선출하였는가.

답 : 2월 10일 오후 2시경 지휘소에서 군경가족과 우익진영 및 16세 이하 60세 이상, 청방(靑防)가족을 제외하고 또 개심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라고 명령하였는데 그후 형사 2명이 왔으므로 그 형사와 선출한 것입니다.

문 : 然이면 何故로 공판정에서는 허위진술을 하였는가.

답 : 연대장과 대대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

문 : 본건에 관하여 현재 심경 여하.

답 : 상부의 명에 의하여 실행하였을 뿐입니다.

문 : 그 작명5호 부록을 여하히 생각하는가.

답 : 과격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상부에서 명함으로 할 수 없이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종대는 남김없이 진실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적어도 총살당한 주민들이 적성분자, 이적행위자가 아니라 피난간 사람이거나 부락에 있

던 사람들이며 비무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허위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허위진술을 한 이유도 상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작명 5호 부록에 대해서도 무조건 정당화한 초기진술과는 달리 ‘과격 한 명령’이지만 ‘명령’이므로 할 수 없이 따랐다고 하여 후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허위조작의 주요부분이 번복되고 있으며, 주민의 성분은 결국 이적행위자가 아니라 양민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③ 작전명령의 위조경위와 책임자 규명

거창사건이 발생한 뒤 국회에 보고된 작명5호 부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5. 간이 재판의 근거⁵⁷⁾

별지 첨부 작전명령 제5호부록 寫本抄와 如함.

「취급구분 군사극비 보11사 9연작명 제5호 지도 5만분지1 보병 제11사단 9연대 본부 경남 함양

단기 4284년 2월 2일 12시

작명제5호부록

一. 신원작전에 참가하는 대대장은 이동군법회의 설치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이적행위자로 판결되는 자는 간이재판에 의거하여 현지 집행하라」

步11師9聯3大情2發第20號

단기 4284년 2월 16일

보병 제11사단 제9연대 제3대대

대대장 육군소령 한동석

연대장 귀하

신원지구 작전중 이적행위자 집행에 관한 건

首題件 금반 신원면 작전중 간이군법회의에 의거하여 이적행위자로 판정된 자를 左記와 如히 집행하였음을 茲에 보고하나이다.

물론 이 작명은 사실이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작전명도 ‘신원작전’이 아니

57) “제1거창(집단학살)사건/국회특위조사보고전문”, 이 보고는 1951년 4월 18일 국회 비공개회의에 제출된 것인데, 경향신문 1960. 5. 17. 석간, 2면에 처음 공개되었다. 자료집(1), 192쪽.

있으며, ‘이동군법회의 설치권한을 부여’한 적도 없으며, 따라서 ‘이적행위자로 판결되는 자는 간이재판에 의거하여’ 처형된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작전명령 부록을 변조한 것은, 마치 신원지역의 공비토벌을 위한 작전이었고, 적정한 재판 절차에 따라 이적행위자를 처벌한 것인 양 호도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물론 적정절차에 의거할 때도 간이재판에 의거한 처형은 있을 수 없는 권한남용, 다시 말해 살인죄에 해당될 따름이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2월 16일자 한동석 명의로 ‘신원면 작전중 간이군법회의에 의거하여 이적행위자로 판정된 자들’ 처형했다는 사후보고까지 조작해낸 것이다. 조작한 당사자로서는 전후 조리정연하게 조작했다는 생각을 품음직도 했을 것이다.

앞서 김종원의 진술대로라면, 작명 제5호 부록 주의사항 1.은 두 차례에 걸쳐 조작되었다.

[원작명] 작전중 미복구지대의 적 수중에 들은 주민은 총살하라.

[1차변조] 作戰中大隊長은 作戰地域에서 利敵行爲者를 發見時는 卽決하라

[2차변조] 신원작전에 참가하는 대대장은 이동군법회의의 설치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이적행위자로 판결되는 자는 간이재판에 의거하여 현지 집행하라

이러한 원작명을 조작한 장본인은 김종원이다. 김종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러한 작명의 수정은 ‘제1차 거창 현장에 출장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제11사단 참모장에 지시하는 중 작전명령이 잘 되지 못하였’다고 걱정하는 것을 듣고 수정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⁵⁸⁾ 그 뒤의 김종원의 진술에서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성모씨가 자신의 불법임을 알고 수정하라고 명한 것이라고 하며 자기는 장관의 부하로서 장관의 의도를 받들어 이를 전달했을 따름”⁵⁹⁾이라 하여 신성모에게 책임을 적극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성모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로 그렇게 수정된 작명에 의거하여 국회조사시에 학살이 아니라 재판의 집행이라 강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작명의 변조가 폭로되게 되었다.

58) 국제신보 1951. 8. 16. “사실과는 상위있다/거창사건, 김대령 전말서 제출”, 자료집(1), 72쪽.

59) 서울신문 1951. 9. 13, 자료집(1), 94쪽.

청취서(오익경), 1951. 6. 10.⁶⁰⁾

문(조사관) : 작명 제5호 부록의 내용 여하

답 : 제1항에 작전중 대대장은 작전지역 내에서 이적행위자를 발견시는 즉결하라는 지시를 하였음.

문 : 이적행위자 즉결방침은 사단 또는 연대의 방침이었음인가.

답 : 연대장(지리산지구전투사령관) 본인의 방침이었음.

문 : 사단장 각하의 승인 여부.

답 : 없었음.

문 : 이적행위자의 한계 여부.

답 : 적에 가담되어 아군작전수행에 직접 간접적으로 행동하는 자를 지칭함.

문 : 연극 미북구지대의 적 수중에 들은 주민을 전부 이적행위자로 간주하였습니까.

답 : 그렇지 않고 미북구지대 내에 적 수중에 들은 주민에도 양민이 있었음

문 : 대대장에게 즉결처분권한을 부여한 법적 근거 여하.

답 : 법적 근거는 없고 다만 조속한 시간 내에 공비를 완전 소탕하기 위한 것임.
[...중략...]

문 : 연대작전 중 즉결한 것은 신원면 뿐입니까.

답 : 타지에는 없었음.

문 : 작명 제5호 부록에 신원작전에 참가하는 대대장에게 이동군법회의 설치 권한을 부여한 사실 유무.

답 : 사실 없는 일이나 사건발단 후 외부 모호 용으로 작성한 것임.

문 : 본 사건으로 인하여 국회는 물론 국내여론이 자자한데 귀견(貴見) 여하.

답 : 이 사실에 대하여 일면적 견지로는 정당한 법적 권한을 가지지 못한 처결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진술 속에 몇 가지 중요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작명 제5호의 부록이 변조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변조된 작명내용은 ‘이동군법회의 설치권한을 부여’한 것이었는데,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변조의 이유는 ‘외부모호용’이라 언급하는데, 외부에서 사건의 진상을 알지 못하도록 증거를 조작했음이 판명된 것이다. 둘째, 주민학살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을 자인했다는 점이다. 국회조사단에게는 이동군법회의가 설치되어 그 군법회의의 판결로써 처형이 이루어

60) 자료집(Ⅲ), 35쪽 이하.

졌다고 강변하였다. 물론 이동군법회의를 현지의 대대에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지만, 위의 진술은 어쨌든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우길만한 것조차 존재하지 않았음을 자인한다. 당시 사건의 직접 지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학살의 법적 근거는 없었다는 것이다.

수사와 재판의 진행에 따라 작전명령 부록을 불법수정한 데 대하여 오익경, 김종원은 물론 신성모가 관련한 사실이 판명되었다. 오익경은 작명 불법수정에 대하여 김종원, 신성모의 관여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하였고,⁶¹⁾ 김종원은 그 점에 대해 국방부장관 신성모의 지시에 의하여 작명을 수정할 것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⁶²⁾ 나아가 그것은 국회조사방해사실과 함께 신성모에 대한 증인신청에 까지 비화되어, 국방장관의 책임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⁶³⁾

④ 국회조사단 활동방해 사건의 진상

수사와 재판상의 최대의 성과는 국회조사단 기습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것이다. 현직 육군장교들의 증언, 오익경의 증언 등을 통해 김종원의 지시하에 공비로 위장한 국군들이 국회조사단을 기습했음이 폭로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었다. 그러자 김종원은 처음엔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다가, 세불리를 느끼게 되자 신성모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고 변명하였다. 이리하여 신성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신성모를 피고인석에 세워야 한다는 여론까지 조성되었다. 이리하여 거창사건의 은폐의 진실이 여실히 폭로됨으로써, 학살자 및 은폐자는 거대한 도덕적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처벌을 피해가기 결정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활동방해사건의 폭로는 다음의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적행위자처벌에 관한 논의지건 보고⁶⁴⁾

(2) 제2차 군법회의(동년 8월 5일, 동월 6일 어(於) 대구고등법원법정)

61) 작명을 수정한 것은 9연대 작전처이다. 오익경은 연대작전처에 명령하여 작명을 수정케 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수정명령한 이유는, “김종원 대령이 국방부장관의 의사이니 그와 같이 작명을 수정하라고 명령하여 왔다”는 부연대장의 보고를 받고 난 뒤 상부의 명령에 의하여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재판부는 그 진술의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자료집(Ⅲ)**, 179~180쪽.

62) **자료집(Ⅲ)**, 176~177쪽.

63) **자료집(Ⅲ)**, 110쪽.

64) **자료집(Ⅲ)**, 108쪽 이하. 국군총참모장 이종찬이 국방부장관에게, 1951. 11. 10.

검찰관측 증인 육군중령 한철(당시 제9연대 부연대장)의 진술에 의하여 작명 불법수정 및 합동조사방해에 관하여 육군대령 김종원이 관련된 사실이 판명되며 피고인 육군대령 오익경의 진술에 의하여 합동조사방해에 관하여 육군대령 김종원이 관련된 사실이 판명. 검찰관측 증인인 육군대령 김종원(군법회의 회부전)은 작명 불법수정 급 합동조사방해를 단독으로 결의감행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였음(육군대령 김종원은 동년 9월 8일 우작명 불법수정 급 합동조사방해에 대하여 별지 기소장 (가) 죄과 제1범죄사실 (1)(2) 죄과 제2범죄사실 (1) 죄과 제3범죄사실 (1)(2)와 여히 군법회의에 회부)

또 검찰관측 증인인 육군소령 육군소령 진월봉(당시 제9연대 제3대대장)의 진술에 의하여 합동조사방해에 관하여 육군대령 김종원이 관련된 사실이 판명되었고 육군소령 최영두(당시 제9연대 정보주임장교)는 우 육군중령 한철의 지시에 의하여 합동조사방해를 감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4) 제4차 군법회의(동년 9월 10일, 동월 11일 어 제5군단 법정)

변호인측 증인인 피고인 육군대령 김종원은 작명 불법수정 및 합동조사방해에 관한 전국방부장관 신성모와의 공범관계를 시인하였음.

관선 변호인 육군소령 조승각으로부터 전국방부장관 신성모를 피고인 육군대령 김종원에 대한 증인으로 신립하였던 바 재판장 육군준장 강영훈은 우 증인신립을 채택한 후 우 증인 출정시까지 휴정을 선언하였음.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합동조사방해에 대해 김종원은 처음엔 단독범행이라고 하다가, 세불리해지자 신성모와의 공범관계를 시인함으로써 자신은 명령에 따른 것 뿐이라고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였다. 김종원 자신의 진술을 통해 국방부장관의 관여사실이 직접 폭로되었고, 그럼으로써 진실로의 일보 전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진실에의 접근은 피고인 상호간의 암묵적인 담합이 깨어짐으로써 가능했다. 피학살주민의 성분에 대한 이종대와 상부의 진술의 괴리, 작명부록의 진실을 둘러싼 오익경과 김종원의 괴리, 작명수정 및 조사활동방해에 관한 김종원과 신성모의 괴리 등은 서로 책임전가의 성격도 일부 띠고 있지만, 그런 책임전가를 통해 전반적인 진실이 보다 분명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호담합으로부터 책임전가로의 태도변화는 여러 여건의 제약 하에서도 수사과 재판을 철저화하려는 의지가 보여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판결에 대한 검토

(1) 판결내용

이번에 입수한 재판기록 전체를 봐도 판결문의 全文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이제까지 소개된 판결내용 및 고등군법회의 판결확인(1952. 1. 14) 두 자료를 통해 그 대강의 내용은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이 사건의 판결문은 다른 것과 달리 앞부분에 <판정이유서>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그 판정이유서 중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것은 경향신문 1951. 12. 21일 자의 것이다.⁶⁵⁾ 다음은 그 내용이다.

檀紀 四二八四年 六月 二十五日 北韓傀儡軍 侵略 以來 嶺南地區를 除外한 祖國 疆土의 殆半이 赤禍에 荒廢되고 無數한 同胞들이 赤魔手中에 呻吟하여 一時 民族의 運命이 空前的 危機에 逢着하였던 것이다. 殺身奉公, 以命救國의 全民族의 決意 앞에 賊徒大群은 雲霧飛散하여 멀리 鴨綠 · 豆滿江邊에 敗走하게 되었다. 然이나 後方地區에서 殘匪落伍軍의 窮鼠의 勢는 日去尤甚하여, 一般 國民뿐만 아니라 國軍 將兵의 憤怒 比할 곳 없을 때 中共逆軍의 不法 侵略은 殘匪의 蠻行에 加油點火하여, 後方治安은 累卵의 危機에 當面하고 一線 將兵의 後顧의 憂慮가 日深하였던 것이다.

此時 智異山地區 共匪討伐任務를 附與받은 步兵 第十一師團 第九聯隊는 急迫한 情勢下에 居昌地區 共匪殲滅이 全般的 作戰 及 國軍運命에 重大한 意義를 銘刻하였던 것임. 然이나 共匪討伐은 愛國 同胞들의 生命과 財產을 保護키 爲 함이라는 國軍作戰 根本精神과, 揭旗投降하는 敵軍은 依法處遇하는 戰場道義를 疎忽히 하여, 卽決處分이라는 國法命令을 部下軍隊에 下達함으로써 天賦된 人權을 蹂躪하였으며, 依命行動한 部隊長도 一部 被疑者를 輕率히 銃殺하여 命令範圍를 離脫하였음.

平素에 敎育과 監督의 不充分으로 此等不祥事를 招來케 됨을 遺憾千萬인 事件의 非道를 責하고 正道를 明示함은 軍隊統帥의 根本임에도 建軍精神에 背離되어 軍紀의 根本을 破壞하고 國軍威信을 損傷케 하였을 뿐 아니라, 實地方針 實踐者는 上部의 錯誤된 方針精神을 惡用하여 事態를 加一層 惡化케 하였음. 受命

65) 자료집(1), 122~123쪽. 그동안 판정이유서는 중앙일보 1971. 12. 24일자 및 동아일보 1974. 4. 17일자의 기사가 널리 인용되어 왔고, 이 둘 중에 지금까지 널리 이용된 것은 후자이나, 전자가 몇 줄 더 자세하다. 그러나 경향신문의 것이 더 정확하고 생략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이 기사를 인용하기를 바란다.

敢行하는 軍統帥의 特殊性과 命令의 尊嚴性에 비추어 責任의 歸추를 論議함이 焦點의 一이다.

命令權限者로 不法한 命令指示를 下達한 데 대해서 이에 責任과 同時 受命 敢行者로써 各各 上部의 命令 指示의 範圍를 離脫한 責任을 避치 못하게 되었음. 그리하여 同犯行에 대한 責任의 分課가 아니라 各異한 行動에 대한 各自의 責任所在를 究明한 바임.

本軍法會議는 被告 등이 滅共戰에 發揮한 巨大한 戰功을 肯認하는 同時에 外部에서 論議되는 黨派의 또는 感情의 解決을 超越하여 輔國安民의 國軍 根本 使命과 背馳되는 犯罪 事實의 重要性和 命脈一貫한 軍隊統帥의 特殊性에 비추어, 國軍 私兵化에 對한 一大警鐘이 되기를 祈願하며, 法治國家의 權威와 健全한 國軍 發展을 爲하여 泣斬馬謖⁶⁶⁾ 茲에 主文과 如히 判定判決함.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서 거창학살 자체와 관련된 판결내용을 보면, 연대장으로 인정된 육군대령 오익경에 대하여 살인(유죄), 군무불신임 초래(유죄), 문서위조(무죄)로 하여 무기징역, 전급료 몰수, 파면 등이 선고되었다. 또한 대대장이었던 한동석에 대하여 살인(유죄), 군무불신임초래(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년, 전급료 몰수, 파면 등이 선고되었다. 소대장 이종대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다음은 각자의 살인에 대해 관여 여부 및 관여내용의 요지를 인용한 것이다.⁶⁷⁾

오익경(작전 연대장) : “피고인의 예하 부대장에 하달하는 그 작명부록(作命附錄)에서 「적의 손에 있는 사람은 전원 총살하라」고 명령함으로써 此 作命에 기하여 그 예하 부대장이 적의 손에 있는 즉 적의 세력하에 있는 사람은 戰鬥員 아닌 非戰鬥員까지도 무차별 살해할 찌도 알 수 없음을 인식하고, 또 비전투원은 작전에 있어서 그 살해 등이 嚴禁되어 있음을 知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전투원의 살해를 용인하고, 그 살해를 명한 점으로써 인정되는 바임.”

한동석(작전 대대장) : “피고인은 본건 당시 대대장의 중책을 맡고 있던 육군소령이라는 고급장교이었으므로, 작전에 있어서 비전투원에 대한 살해 등의 가해

66) 경향신문에는 ‘活참之稷’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泣斬馬謖이라 소개되어 있다. ‘活참之稷’은 아무 뜻도 없거니와, 문맥상으로 볼 때도 읍참마속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 문구만 읍참마속으로 고쳐 정리하였다.

67) 현재까지 거창사건에 대한 고등군법회의 판결문 정본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다만 1952. 1. 9. 육군본부 법무감 명의로 작성되어 1. 14.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고등군법회의 판결확인」이란 서류에 개개인에 대한 관시사항이 나와 있다. 인용은 바로 이 판결확인이다. 자료집(Ⅲ), 179~183에서 정리한 것임.

행위는 엄금되어 있음을 知悉하였을 것임으로, 설혹 聯隊作命이 「적의 손에 있는 사람은 전원 총살하라」는 애매한 작명이었다 할찌라도 피고인은 대대장으로 서 此 작명 수행에 있어서는 그 애매한 점은 상부에 질의를 하든지 혹은 긴급한 경우에는 該 명령은 작전명령임으로 어데까지나 작전명령으로서의 정당한 해석과 판단을 가하여써 그 「전원」이라 함은 「전투원」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시 작명의 문구가 모호하였음을 기화로 그 부하로 하여금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없이 此를 전시와 如히 살해케 한 점으로써 인정할 수 있음”.

이종대(작전 소대장) : “전시 범죄사실과 如히 총살한 피고인의 所爲는 인정되나, 此는 대대장의 작명실행행위로서 한 것임으로 그 犯意 없음이 귀착한다.”

이러한 사실관계의 토대 위에서 내려진 판결주문은 명령권자에 대하여는 “즉결처분이라는 국법명령을 부하 군대에 하달함으로서 천부된 인권을 유린하였”다는 것과 함께, 현장지휘관에 대하여는 “依命 행동한 부대장도 일부 피의자를 경솔히 총살하여 명령범위를 이탈하였다”, 혹은 “상부의 착오된 방침 정신을 악용하여 사태를 가일층 악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오익경은 명령권한자로 불법한 명령지시를 하달하였고, 한동석은 상부의 명령지시의 범위를 이탈한 책임을 인정하여 살인죄 및 군무불신임초래죄의 유죄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다음 작명위조와 관련하여 문서위조죄가 문제시되었다. 김종원은 자신의 작명부록 위조지시는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이를 9연대장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자기는 ‘일개 使者’에 지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신성모는 자신이 작명부록을 수정하도록 ‘지시명령한 사실은 없고, 제9연대가 소속한 제11사단장에게 그러한 내용의 작명이 어데 있느냐, 차후에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이한 진술을 검토한 재판부는 김종원의 입장이 맞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 이유로서 신성모는 거창사건의 선후책에 부심하였고, 국회와 정부에서 거창사건의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물의가 높았으며, 국군의 소위에 간한 문제이므로 중대한 책임추궁을 받을 지위에 있었던 반면, 김종원은 ‘직접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받을 지위에 있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김종원은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그 명령을 전달’한 ‘사자’에 불과하므로, 범의가 없다고 보아 문서위조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시하였다.⁶⁸⁾ 작

68) 자료집(Ⅲ), 177쪽.

명위조의 실행자인 오익경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강제에 기인한 소위라고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무죄로 판시되었다.⁶⁹⁾ 요컨대 재판부에 따르면 작명위조의 책임자는 국방장관 신성모인 것이다. 다만 신성모에 대한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작명위조에 대한 사법적 추궁은 미제에 그쳤다.

다음 국회조사단의 조사활동방해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시되었다. 그에 대하여는 김종원의 책임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2) 재판의 문제와 한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와 증거수집상의 노력 중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초기의 주요 쟁점 중 상당부분이 규명되지 못한 채 넘어가고 말았다.

첫째, 수사진과 재판부는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현지조사와 피해자 조사를 했더라면, 보다 구체적인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몇 명이나 죽었는가에 대해서 187명이란 숫자를 대체로 받아들였고, 피해자명단을 작성하려는 생각도 없었다. 부녀자, 노유자가 얼마나 죽었는가에 대해서도 초기의 국회조사 작업 이상으로 밝혀낸 바가 없다. 죽은 시점과 지역도 오직 2월 11일의 건만 문제삼고 있으며, 2월 9일과 10일의 학살사실은 언급되지 않았다. 주민의 성분에 대해서도 무장/비무장 여부, 적성분자/이적행위자/양민인지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았다. 피살자의 신원이나 결백함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요컨대 가해자의 처벌은 일부 이루어진 반면, 적어도 피해자적 관점에서 진실의 규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며, 나아가 피해자를 위한 원상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실현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었다. 때문에 학살의 범죄성을 확정짓고 가해자를 처벌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배상조치가 따르지 않았다. 주민학살은 잘못된 것이지만 학살당할 만한 이유가 없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이다. 피해유족들이 몇십년동안 사실상 탄압받아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가해자 처벌의 불충분함과 피해자구제에 대한 무시로 인한 불만과 원성이 누적되어 있다가 4·19 이후 박영보 면장의 피살의 형태로 폭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를 위한 온전한 원상회복의 과제는 오늘 날까지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69) 자료집(Ⅲ), 180쪽.

둘째, 수사와 재판에서의 초점은 주민학살사실 그 자체보다는 학살된 주민의 성분, 즉결처분의 법적 근거, 작명위조, 국회조사활동방해 등이었다. 가해자의 처벌을 생각한다면 187명이나 719명이나 살인죄임에는 별 차이가 없기에, 다수 주민의 학살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다고 주장될지도 모른다. 학살 못지 않게 비난받을 대목은 학살을 자행하고도 은폐하려는 공작일 수 있다. 사실 작명위조·조사활동방해 등을 자행하지 않았다면, 거창사건이 전시하에서 그토록 주목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승만의 총애와 함께 수많은 정적을 양산했던 신성모와 김종원의 존재와 은폐기도는 거창사건을 역설적으로 전국적 이슈로 부각시키고, 분노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거창사건이 정치적 이슈화됨으로써 이승만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파들이 한걸음 물러서게 되었다. 그 점에서 거창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당시의 정치적 역학과 권력이동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거창사건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이미 국회는 “지휘감독의 직책이 있는 사단장 이상의 책임자와 현지의 행정집행자를 준엄처단 또는 징계”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⁷⁰⁾ 사단장(최덕신)의 형사책임 문책은 당시에 논의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으나,⁷¹⁾ 사단장에 대하여는 어떤 책임추궁이 시도되지 않았다. 사단장책임론의 주요 논거 중의 하나는 작명 제5호 부록의 첫머리에 “사령관 각하로부터 左記와 如한 주의사항 有하옵기…”의 사령관은 사단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작명이 연대장의 명의로 나가는데, 연대장이 자신을 ‘사령관 각하’로 지칭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익경에 대한 예심조서에서 “사령관”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나는 물음에 대하여 오익경은 “당시에 사단에서 군대 구분을 제9연대는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라고 호칭하고 연대장을 전투사령관이라고 호칭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사령관이라는 어구는 본인 즉 제9연대장을 지칭하는 것”이라 답하고 있으며, 실제의 기재자는 연대작전주임장교가 한 것이라고 한다.⁷²⁾ 즉 연대작전주임장교가 주의사항을 기재하면서, 연대장을 ‘사령관 각하’라 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연대장을 ‘사령관 각하’라고 부르는 관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이다.

70) “거창사건조사처리에 관한 결의”, 1951. 5. 14. 제80차 통과, **자료집(Ⅱ)**, 35쪽.

71) 김부남(당시 육본 법무감실 법무관)의 다음 증언을 참조. “이 사건에 사단장도 군법회의에 회부하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됐지만, 나는 형사책임은 연대장 선까지 지우기로 하고, 사단장은 징계위원회에 넘기도록 건의했어요.”(**민족의 증언**, 237~238)

72) **자료집(Ⅲ)**, 76쪽.

반면 사단장책임론을 뒷받침할 정황과 자료는 훨씬 풍부하다. 첫째, 작명 제5호의 내용은 견벽청야작전의 핵심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견벽청야작전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사단작전의 기본방침으로 삼은 것은 다름아닌 최덕신이였다. 사단장 최덕신은 일제하에 중국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이 견벽청야작전을 실제로 익혔고, 이를 공비토벌작전에 사용했다.⁷³⁾ 둘째, 거창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에서 연대작전은 사단의 합동작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실제로 제11사단의 작전방침으로 인해 민간인에 대한 대량살상이 신원면 뿐 아니라 지리산 인근의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볼 때, 연대장은 사단작전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오익경의 변호인의 변론은 정확한 맥을 짚고 있다.⁷⁴⁾

작명 제5호 부록 주의사항 제1항을 연대장 자격으로 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사단 작전참모를 지낸 피고가 사단작전방침에 순응해서 소정 기일내에 목적을 달성하려고 부득이한 조치를 하였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 작명은 사실심리한 바와 마찬가지로 작명이 하달된 후 사단작전처를 거쳐 사단장이 승인한 작명입니다. 만약 사단작전방침에 근본적으로 어그러지는 것이면 사단장은 묵인하였을 리 만무입니다. 그 즉석에서 수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작전명령을 연대장이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단작전방침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요컨대 변호인에 따르면, 연대장은 무죄이며, 작명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사단장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작명부록에 기하여 이루어진 비전투원의 살해를 용인하고 그 살해를 명한 데 대해 연대장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작명문구가 모호하였음을 기화로 그 부하로 하여금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없이 살해케 한 점에 대해 대대장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한편 소대장이 경우에는 살해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대대장의 작명실행행위로서 범의없음에 귀착한다고 하여, 실행자의 책임은 면하고 있다. 요컨대 살해행위에 대하여는 연대장, 대대장 선에서 책임을 국한시키고 사단장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작명수정 및 국회조사방해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국방부장관에 대한 재판을 진행못한 결정적인 문제점이 남아있는 것이다.⁷⁵⁾ 이것은

73) 박명림, “한국에서의 전쟁, 인권, 평화 — 탈냉전의 퍼스펙티브에서 본 거창사건 사례 연구 —”, 한인섭 편, **거창사건의 진상규명 및 법적 해결**, 2001, 123~131쪽 참조.

74) **자료집(Ⅲ)**, 154쪽.

당시의 시대적 한계이자 거창재판의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양형에 있어 5명의 피고인이 사형선고를 받고 총살집행된 국민방위군 사건과 비교해 볼 때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더욱 문제는 실형을 받은 피고인들도 복역 1년을 전후하여 모두 특사로 출감했고, 복직복권까지 되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처벌위원의 의사가 이런 형집행의 과행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다음은 관련자들의 이후 행적들이다.

[1952년]⁷⁶⁾

1. 9. 육군본부 법무감(이호) 재결건의
1. 14. 육군총참모장(이종찬) 집행확인 상달
1. 21. 국방부장관(이기봉) 집행확인
1. 29. 오익경 형집행(파면, 전급료몰수, 무기징역), 육군형무소 수감.
한동석 형집행(파면, 전급료몰수, 징역 10년).
3. 1. 한동석, 대통령 특사로 징역 6개월 감형, 8. 15. 다시 감형.
9. 14. 오익경 형집행정지로 석방.
10. 8. 한동석, 복역성적 우수로 잔형집행정지처분을 받아 석방.

[1953년 이후]

오익경의 경우(육사 2기생) : 1952. 9. 14. 형집행정지로 석방. 1953. 8. 1. 대통령령으로 형면제, 1953. 11. 25. 현역복귀, 1955. 6. 16. 군기술요원 파견요원 선발, 중공업에 파견되어 기획부장. 1956. 11. 30. 자진예편, 예비역 편입. 1960년 현재 대한중공업 업무부장.

한동석의 경우(육사 4기생) : 1952. 10. 8. 복역성적 우수로 형집행정지처분으

75) 실제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변론을 하고 있다(자료집(Ⅲ), 155쪽 이하를 정리함).

한동석: 작명은 군의 지상명령이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작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정보장교를 내세우고, 현지 경찰관을 입회시켜 심사했다. 작명을 이행한 부하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예는 없다. 그러므로 무죄다.

이종대: 대대장의 사형집행명령에 따라 사형을 집행한 것이고, 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그 행위가 불법이라 할지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김종원: 작명위조, 사체이장, 조사방해 등은 모두 국방장관의 지시에 의거한 것이므로, 처벌하려면 신성모를 처벌해야 한다. 김종원을 처벌한다면, 신성모를 더욱 처벌해야 하는데, 이를 처벌하지 않고 하수인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76) 이하 오익경, 한동석의 경력에 대하여는 국제신보 1960. 5. 17. "10년 죄수가 영전/거창사건 관련자 1년 채 못 살아", 자료집(Ⅰ), 195~196쪽을 참조한 것이다.

로 석방, 1953. 11. 23. 복직, 1955. 9. 1. 중령 진급, 1960년 현재 현역 중령으로 복무 중.

(3) 판결의 의의

위에 지적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거창사건 판결은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국군이 저지른 대량의 민간인학살에 대한 첫 유죄판결로서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적 확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한 판결을 성취하기까지는 피해유족들의 초기의 용기와 의지가 국회와 정부와 군부를 움직였다. 특히 전시하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조사단을 파견하고 결의를 끌어낸 국회의 노력에 우리는 특히 주목한다. 아울러 이 문제가 사법적 쟁점으로 넘어온 후, 전시하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진은 의지를 갖고 임했으며, 그 결과 작명위조 및 합동조사방해사실에 대한 진상을 규명했고, 국회조사로는 얻을 수 없었던 많은 물증을 확보했던 것이다. 따라서 완전히 진상규명이 되지는 않았다 해도, 진상규명의 주춧돌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가불법에 따른 원상회복의 요구 —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손해배상, 사과 및 위령사업 지원 등 — 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판결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몇십년간 거창유족들의 투쟁은 이 판결로부터 원천적인 힘과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몇십년간 유족들의 활동을 탄압했던 군부조차도 그들의 탄압을 정당화할 빌미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실로 1951년 거창재판 덕분이었다. 나아가 최근 거창사건 이후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법원이 인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역시 1951년 거창재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⁷⁷⁾ 거창재판 자체가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지만, 원상회복을 향한 추진력은 거창재판에 힘입고 있는 것이다.

셋째, 또 다른 의의는 거창판결이 지닌 재발방지효과와 관련된 것이다. 거창사건의 폭로와 재판 이후 군이나 경찰에 의한 대규모의 양민학살사건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실로 거창유족들의 투쟁은 국가의 권력남용형 학살에 쫓겨 박음으로써, 민간인의 생명을 보전하고 나아가 국가 자체의 위신을 보전하는 데 기여했다.

7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제1민사부 판결), 2001. 8. 24. 2001가합430 참조.

넷째, 이번에 언론과 국회와 법원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총체적 진실의 복원을 위해, 피해자 측의 증언을 입체적으로 수집할 필요성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재판자료 역시 진실의 일면만 보여주며, 피해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측, 가해자측의 자료와 증언과 진술만이 진실인 것으로 통용된다. 피해자(본인, 유족)들의 증언은 1951년 2월 거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 다시 누구에 대한 비난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피해경험자들은 부대의 지휘체계라든가, 당시의 군부와 정치권의 관계라든가 하는 것을 증언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피해경험자들은 학살이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즉각적, 장기적 효과를 자아내는가를 말한다. 이것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이다. 구체적 진실만이 구체적 악을 제동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Abstract>

Analyzing Military Trial of Kochang Massacre in 1951

In Sup Han*

In February of 1951, the Korean Army massacred unarmed villagers in Kochang county. Such killings were not confined to Kochang area because the Army occasionally abused its power in the name of anti-guerilla combat. The uniqueness of Kochang massacre was that only this massacre were exposed to the public, and prosecuted at the Military Tribunal. Some of key figures were found guilty, and sentenced to imprisonment.

In this paper, I focus on how the trial could be realized, and how its effect were. I could happily gather the primary documents from National Assembly to Military Tribunal, and compiled newspaper materials. Based on such documents, I tried to describe full contents on the case.

One of my interest in this study was the comparison of truth-finding competence between the political body and the judiciary. The National Assembly started to reveal the tragedy, and established the hearing committee. But, National Assembly could not overcome the concealment of the military. On the other hand, the judiciary, albeit in the form of the military tribunal, could reveal how the military falsified its involvement, and fabricated the operation document itself. This implies that the truth-finding by the judiciary could play a vital role in truth-finding.

The contribution of Kochang Case to Korean society was that any wartime massacre didn't happen after Kochang Case were revealed. The expose and trial of massacre became the bulwark against the abuse of power. Of course, this trial were criticized in many aspects, but any criticism cannot neglect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the trial itself.

* Associate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